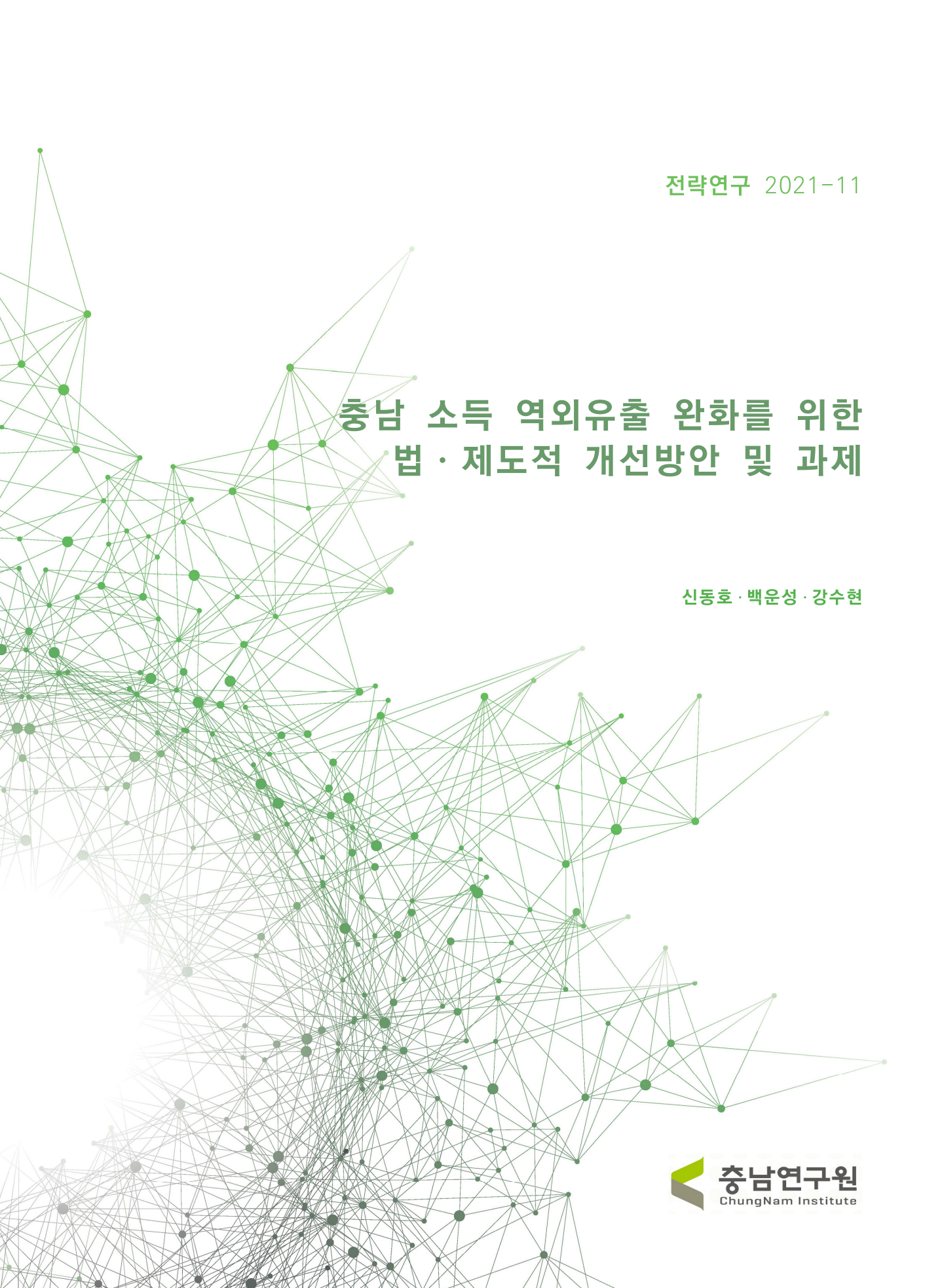




전략연구 2021-11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과제

신동호 · 백운성 · 강수현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	3
4. 연구방법 및 연구흐름	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7
1. 이론적 배경	7
2. 관련 연구동향	9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4
제3장.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실태 분석	16
1. 소득 역외유출 규모 및 추이 분석	16
1) 생산소득과 분배소득 간 격차	16
2)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변화 및 추이	18
2. 영업잉여 및 피용자보수 유출입 분석	22
1) 지역계정을 활용한 소득 유출 요소 분석	22
2) 지역별 고용조사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 유출입 분석	28
3. 지역자금 및 소비 유출입 실태	33
1)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입	33
2) 지역 소비의 역외유출입실태	34
4. 시사점	39
제4장 소득 역외유출 완화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추진사례	40
1. 관련 법제도 현황	40
1) 국가법령 제정·운용 현황	40

2) 타지자체 조례 제정·운용 현황	49
3) 충남도 조례 제정·운용 현황	52
2. 소득 역외유출 완화사례	55
1) 타지자체	55
2) 충남도	60
3.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64
제5장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66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66
2. 주요 분석결과	67
1) 일반사항	67
2) 개선방향	69
3) 법·제도적 개선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71
3. 전문가 정성적 의견종합	73
4.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7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78
1. 요약 및 정책제언	7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80
■ [참고문헌]	81
■ [부록] 설문조사지	84

표 차례

〈표 1-1〉 통계청 지역계정 이용자료 내용	5
〈표 2-1〉 관련 연구동향 검토결과 종합	13
〈표 2-2〉 기존연구와 본 연구간 비교	15
〈표 3-1〉 지역별 소득 역외유출입 현황(2019년 기준)	17
〈표 3-2〉 지역내총산(GRDP) 대비 소득유출률	21
〈표 3-3〉 시도 계정별 역외 유출액(2019년 기준)	24
〈표 3-4〉 충남의 계정별 역외 유출액 규모	26
〈표 3-5〉 충남의 근로소득 유출입 비중	30
〈표 3-6〉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황	34
〈표 4-1〉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 개요	42
〈표 4-2〉 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21)	43
〈표 4-3〉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21)	44
〈표 4-4〉 소득 역외유출 완화 관련 국가차원의 법·제도 현황	47
〈표 4-5〉 소득역외유출 완화 관련 지지체 조례제정 사례	51
〈표 4-6〉 소득 역외유출 완화 관련 충남도 자치법규(조례·규칙) 현황	54
〈표 4-7〉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타지자체 추진사례	58
〈표 4-8〉 지역 인재채용 목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서	60
〈표 4-9〉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현황(‘21)	61
〈표 4-10〉 충청권 은행설립 주요 추진상황	62
〈표 4-11〉 충남 지역화폐 발행유통 현황(2021.6월)	63
〈표 5-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66
〈표 5-2〉 법·제도적 개선과제 중요도 및 시급도 순위	71
〈표 5-3〉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종합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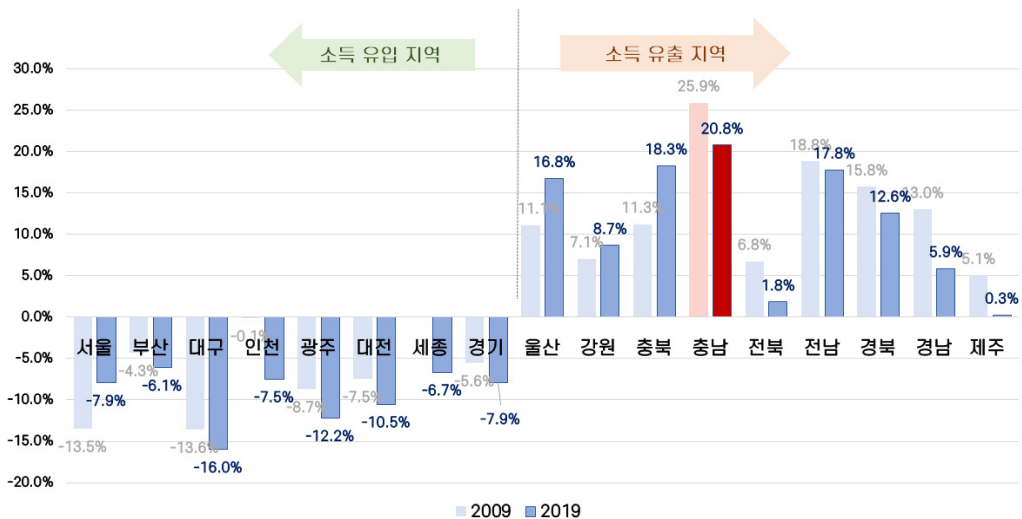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1-1] 시도별 소득 역외 유출·입 비중 추이	1
[그림 1-2] 충남 소득 역외유출 규모 및 비중 추이	2
[그림 1-3] 지역경제 (선)순환 과정	3
[그림 1-4] 역내외 소비실태 분석틀	5
[그림 1-5] 근로소득 유출·입 실태 분석틀	6
[그림 1-6] 설문조사 개요	6
[그림 3-1] 충남의 역외 소득유출 현황(금액, 비율)	18
[그림 3-2] 시도별 역외 소득유출액 추이(2000~2019)	19
[그림 3-3] 도 지역(경기도 제외)의 역외 소득 유출률 추이	20
[그림 3-4] 지역계정의 구성 요소	23
[그림 3-5] 지역외 순수취본원소득의 구성요소	23
[그림 3-6] 요소소득과 재산소득의 역외유출 규모와 변화	27
[그림 3-7]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의 역외유출 규모와 변화	28
[그림 3-8] 근로소득 유출입 실태 분석 모형	29
[그림 3-9] 충남의 근로소득 유출입 비중	31
[그림 3-10] 충남의 근로소득 지역별 유출 비중	32
[그림 3-11] 역외 자금유출입 경로	33
[그림 3-12] 충남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현황	35
[그림 3-13] 역내소비, 역외소비 및 소비 유입 개념	36
[그림 3-14] 충남지역 역외소비율 변화 추이 및 지역별 역외소비율 현황	37
[그림 3-15] 충남지역 거주자의 역외소비 지역 및 업종별 소비	38
[그림 4-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책임제	45
[그림 5-1] 소득 역외유출 완화노력	67
[그림 5-2] 소득 역외유출 유형별 정책 시급성	68
[그림 5-3] 관련법령에 소득 역외유출지역 포함 필요성	68
그림 5-4] 소득 역외유출 개선부문 우선순위	69
[그림 5-5] 법·제도적 개선방향 우선순위	70
[그림 5-6] 소득 역외유출 개선과제의 시급도 및 중요도	72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충남 지역경제의 핵심이슈 중 하나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수준을 줄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¹⁾ 이에 충남도는 지역소득의 순환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생산과 소비연계를 위해 6차 산업 및 로컬푸드 중심의 농업정책과 직주분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의 입지정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자료 : 통계청

*역외유출률 = (1-지역총소득/지역내총생산)*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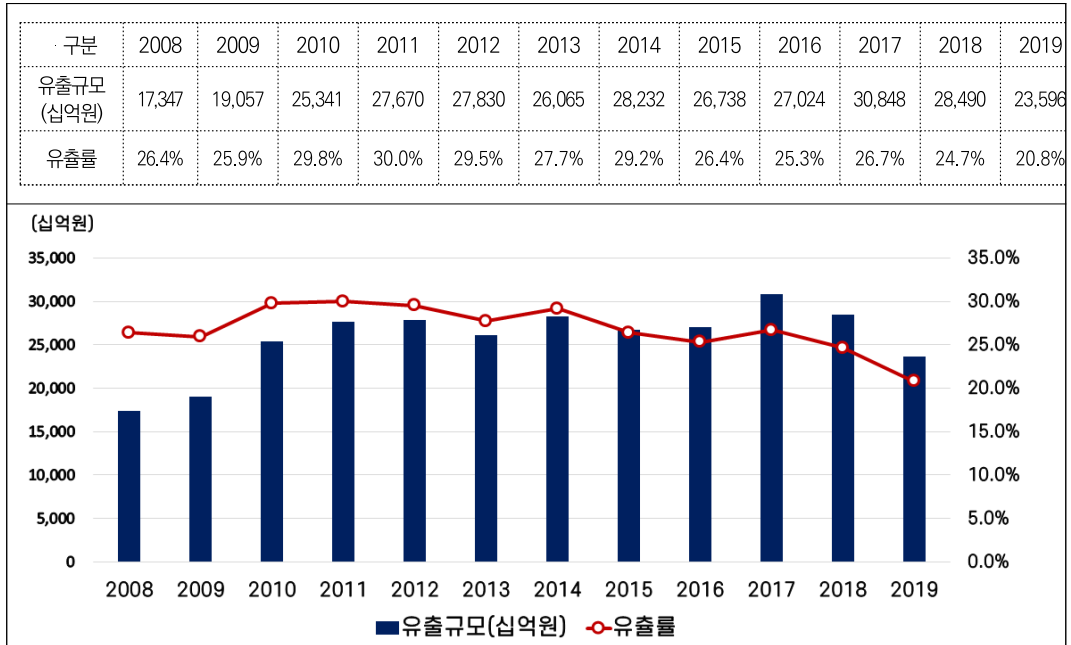
[그림 1-1] 시도별 소득 역외 유출·입 비중 추이

1) 소득 역외유출이란 지역에서 창출된 요소소득(영업잉여 및 피용자 보수)이 분배와 지출의 과정에서 해외 및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유출경로는 분공장 형태로 인한 영업잉여의 타지역 소재 본사귀속과 직주분리(職主分離)로 인한 피용자 보수의 역외소비를 들 수 있음

* 영업잉여 : 지역 내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자본소득

** 피용자 보수 : 지역 내 생산을 위해 투입된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

2019년 현재,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비중은 20.8%이며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1위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 25.9%에서 2019년 20.8%로 동 기간 중 5.1%p 감소하는 추세이나 역외유출 비중이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그림 1-2] 충남 소득 역외유출 규모 및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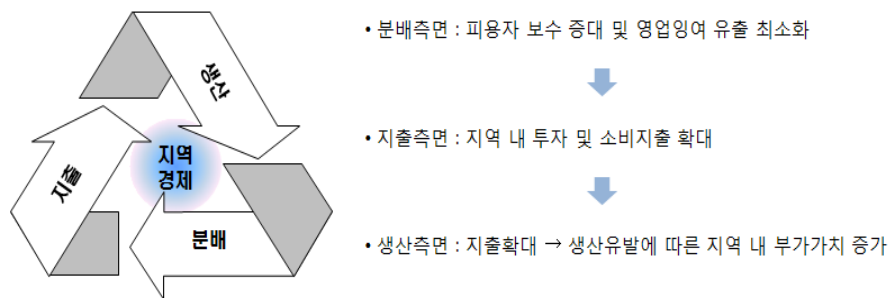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경제의 순환구조(생산 → 분배 → 지출)과정에서 요소소득을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로 구분하여 역외유출 규모 및 원인 등의 경로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소득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유출 경로별로 세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의 소득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제도 측면의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 역외유출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정책영역별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 및 자금의 역외유출 수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제도 측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 그리고 자금의 역외유출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 측면의 대안 마련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투자제도 측면에서 지역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수준을 높이고, 입지제도 측면에서는 분공장 형태의 기업입지를 현지 법인화로 유도하며, 소비제도 측면에서는 지역 내 소비를 확대케 하는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충남도 차원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경제순환(circulation of economy)구조 즉, 생산 → 분배 → 지출 과정 중에서 소득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분배 및 지출국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내 창출된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에 대해 각각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로 분배된다.



[그림 1-3] 지역경제 (선)순환 과정

따라서 지역경제의 순환과정 중 분배측면에서는 요소소득(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의 역외유출 규모와 추이 등을 살펴본다. 한편, 분배된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의 일부는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로 이어짐에 따라 지역경제 순환과정 중 지출측면에서는 소비의 역외유출 규모 및 추이를, 투자측면에서는 자금의 역외유출 규모 및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소득 역외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지자체 조례포함)와 관련해서는 첫째, 영업잉여의 현지화와 관련한 법·제도로 지방이전기업지원, 지방투자 촉진, 지역 법인화 등 지역 내 영업잉여의 역외유출을 개선할 수 있는 입지 및 유통 산업발전 관련 법·제도 등을 살펴보고 둘째, 피용자 보수의 지역 내 소비 관련 법·제도로 지역 인재채용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직주일치(職住一致)와 관련한 법·제도, 셋째, 자금의 투자 및 소비지출 관련 법·제도로 지역 재투자 및 지역화폐 등 지역 내 소비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등을 살펴본다. 끝으로 소득 역외유출을 완화하기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시책을 충남도 및 타지자체로 구분하여 생산, 고용, 소비, 투자, 정주환경, 금융, 기타 등 정책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및 연구흐름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역경제 순환구조에 따라 분배측면에서의 소득 흐름을 검토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계정 자료 중 지역별 요소소득과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을 토대로 소득 역외유출 규모 및 추이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영업잉여 및 피용자 보수로 구분하여 역외유출 규모 및 추이를 살펴본다.

〈표 1-1〉 통계청 지역계정 이용자료 내용

구분	범위	내용
경제활동별 지역내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시도	(산업별) - 산출액, 중간소비 - 지역내총부가가치, 고정자본소모 - 지역내순생산, 기타생산세 - 지역별 요소소득
지역별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시도	-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 순생산 및 수입세, 재산소득 - 순본원소득, 총본원소득 - 경상세, 사회부담금 - 순처분가능소득, 총처분가능소득 등

둘째, 신용카드 소비주체와 사용처 주소지 정보를 활용하여 역외소비 수준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기반하여 충남지역 거주자의 역외소비 규모와 비중을 분석한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소속지역				
신용카드 이용지역		충남거주자	충남외 거주자	합계
	충남지역	A(역내소비)	C(소비유입)	A+C
	충남 외 지역	B(역외소비)		
	합계	A+B		

* 역외 소비비중 : $B/(A+B)$, 소비 유입률 : $C/(A+C)$, 소비 순유출 비중 : $(B-C)/A$

[그림 1-4] 역내외 소비실태 분석틀

셋째,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근무지역(회사소재지)과 거주지역 구분에 따른 근로소득 자료를 토대로 직주분리 및 근로소득 유출·입 실태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충남 소재지역 근로자의 직주분리 및 소비의 역외유출 실태를 분석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²⁾

1. 이론적 배경

내발적 발전론은 1970년대 일본의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된 지역발전이론으로 정치·경제권력을 배제한 사회적 운동으로서 츠루미 가츠코(鶴見和子)에 의해 동 용어가 최초 사용되었다. 한편,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는 지역 불균등론을 비판하는 동시에 외래형 지역개발의 대응논리로 동 이론을 발전시킨 바 있다. 내발적 발전론은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개발성과의 지역 내 순환을 지향하는 바, 지역이 주도하는 다양한 경제부문의 발전을 토대로 지역 내 산업연관의 형성 및 부가가치의 지역 내 순환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내발적 발전의 목적은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부문의 발전을 통한, 지역 내 산업연관의 형성과 지역 내 경제순환이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내발적 발전론은 내생적 발전론과 유사하나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띄고 있다(宮本憲一 외, 2004).

첫째, 대기업이나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의 기술, 산업, 문화를 토대로 지역 내 시장의 발전을 중시하고 지역주민이 학습, 계획, 경영하는 것이다. 둘째, 환경보전의 틀 속에서 개발을 생각하고 자연의 보전이나 아름다운 거리를 창출하는 쾌적성을 중시하며 복지나 문화를 향상시킴에 따라 주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는 개발이다. 셋째, 산업의 발전은 특정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연관구조를 지역 내에서 완성하여 부가가치가 그 지역에 귀속하는 것과 같은 지역경제의 질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자치단체가 주민의 요구를 기초로 하여 자본이나 토지소유를 공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자치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외래형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진출한 기업의 경영방침은 기업계열의 이익을 우선하고 해당지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회사를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의 일부는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연구(2012)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함.

동반하거나 계열 내 거래로 인하여 지원산업 및 지원기업과의 산업연관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유치·진출한 기업의 이익은 본사가 있는 대도시 등 역외로 빠져나가 지역경제의 확대 재생산에 귀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다수의 외래형 개발은 환경파괴형으로 지원기업이 아니므로 환경이나 지역고용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반을 정비할 수는 있어도 진출이나 철수, 조업 등의 의사결정은 민간기업이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의지대로 계획적인 경제진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특히, 분공장 형태로 유치된 대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내 자본의 역외유출은 지역경제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역외로 유출된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분공장 경제(branch plant economies)가설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점들로는 첫째, 투자결정 등 경영전략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역외의 본사로부터 외부통제를 받으므로 자율성이 부족하다(宮本憲一 외, 2004). 둘째, 지역간 산업연관은 활발해도 지역 내 관련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역 내 산업연관은 미약하다(宮本憲一 외, 2004; Turok, 1993; Phelps, 2008). 셋째, 일자리 측면에서도 일자리 안정성 및 질이 부족한데 특히, 국내기업의 분공장이 다국적 기업 분공장보다 일자리 안정성이 더 나쁘며 대부분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한다(Colombo and Delmastro, 2000; Roberts, 1996). 넷째, 고차원의 연구개발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연구개발 및 제품변형이 주를 이룬다(Morris et al., 2007). 끝으로 전술한 요인들로 인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력이나 내발적인 혁신력이 형성되지 않는다(宮本憲一 외, 2004).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에 의하면 지역경제를 진흥하는 본래의 목적은 현 세대와 함께 미래 세대를 걸쳐 전체 지역주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경제진흥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 주된 과제는 다음과 같음을 역설하였다.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해서는 부의 유출을 억제하고 유입을 늘려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 소득분배의 공평을 유지하는 것, 고용기회를 확대해 가는 것, 그리고 환경과 자원을 보전하면서 경제발전을 진전시켜 가는 것이 주된 과제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활동의 성과인 사회적 잉여를 지역경제를 확대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기업을 유치하여 출하액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더라도

이윤이 역외의 본사로 유출되거나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지역 경제를 진흥하려는 목적은 결코 달성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2. 관련 연구동향

박진도(2011)는 내발적 발전론에 대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의 성과가 최대한 지역 내에 보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순환형 경제를 실현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자립을 추구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³⁾ 나아가 내발적 발전의 목표는 단순한 경제적 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즉,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세 요인을 모두 감안하는 통합적 발전(integrated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반면, 내발적 발전과 대비되는 외생적 발전은 지역 내 생산의 이익이 외부자본가에게 유출되고, 지역경제가 외부시장과 자본에 의하여 통제되는 의존성이 심화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약화되며, 지역생산의 증대가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직접 연계되지 못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하여 박 경(2011)은 도내 천안·아산지역에 소재한 상당수의 대기업이 분공장 형태로 입지한 탓에 창출된 영업잉여가 본사가 소재한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소득의 역외 유출에 기인한 지역 내 생산과 소득의 괴리 탓에 민간소비지출 증가가 충남 지역경제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⁴⁾ 신동호 외(2012)는 지역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충남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분배·지출측면에서 지역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⁵⁾ 먼저 지역경제 순환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생산측면에서 중간재의 경우, 역외 조달비중이 역내 조달비중보다 높으며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둘째, 분배의 측면에서 소득의 유출비중이 전남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의 역외유출 비중이 각각 38.9%, 33.8%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출의 측면에서 최종재 수요에 대한 역내 조달비중이 역외 조달비중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한국은행 대전

3) 박진도(2011),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4) 박 경(2011), 우리나라 지역간 소득의 역외유출현상(충남을 중심으로), 계간 공간과 사회, 제21권 4호, 통권 38호, 한국공간환경학회.

5) 신동호 외(2012),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연구, 전략연구, 충남연구원.

충남본부(2013)는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⁶⁾ 분석결과, 소득 역외유출의 주요 경로는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의 수도권 및 대전 등지로의 유출이며 그 규모는 약 24조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역외유출 원인으로 ①광역경제권 허브 인접, ②수도권 인접, ③지역기업 본사의 수도권 소재 등을 들었다. 정책과제로 ①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확충, ②서산당진, 천안아산 및 내포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③기업본사 유치노력, ④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이인로(2021)는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가 약 25조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라 분석하였다.⁷⁾ 역외 유출은 분공장 형태의 높은 입지비중과 직주불일치현상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각각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가 유출되고 있고, 특히 본사가 충남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서울지사가 실질적인 본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목할 만한 분석결과 중 하나는 충남지역 내 거주자의 역외소비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 소비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전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허문구 외(2015)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서 발견되는 생산소득과 분배소득간 격차 문제의 원인을 소득의 역외 유출 경로 추적을 통해 규명하는 한편,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⁸⁾ 분석결과, 경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주된 경로는 본사-분공장 체제로 인한 영업잉여 유출보다 직주불일치로 인한 근로자 임금 유출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정책과제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역량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해야하며, 통근 유입근로자의 역내 거주 생태계 조성 및 기업의 본사기능 적극 유치를 주장하였다. 또한 지출의 관점에서 소비 및 정주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통해 역내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행 울산본부(2013)는 울산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⁹⁾ 분석결과, 분배측면에서 기업 소득의 역외이전(영업잉여 순이출)과 근로소득 역외유출(피용자 보수 순이출)규모는

6) 한국은행 대전충남(2013), 충남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조사연구보고서.

7) 이인로(2021), 충남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및 거주자의 역외소비, 경제공동체 분야 컨설팅 회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8) 허문구 외(2015), 지역소득 역외유출경로 추적과 생산분배소득 격차요인 분석(경남지역의 생산분배소득을 중심으로), 경남경제리뷰, 한국은행 경남본부.

9) 한국은행 울산본부(2013), 울산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연구보고서.

25.1조원에 달하며, 지출측면에서 민간 최종소비지출은 전국대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한 정책과제로 ①기업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지역 내 정착유도, ②정주여건 개선, ③소매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지역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제시하였다. 김시백(2019)은 전북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를 추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¹⁰⁾ 2017년 기준으로 전북지역의 역외유출 규모는 3.7조원으로 16개 시도 중 8번째 규모이며, 직주 불일치에 따른 근로소득 유출보다는 분공장, 지사, 영업소 중심의 기업 입지로 인한 기업 소득 유출이 더 큰 지역임을 밝혔고 정책과제로는 ①본사기능 유치 및 향토기업 경쟁력 강화, ②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③지역화폐 도입 및 지역 소비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정재준(2018)은 국가 내 지역불균형 발전의 원인 중 하나로 지역 내 생산액 또는 지역의 부가 지역 외로 유출된다는 전제하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내 총생산과 지역총소득 비교를 통한 소득의 역외유출 분석을 시도하였다.¹¹⁾ 분석결과, 소수의 지역으로 지역내총생산의 유출이 집중되는데, 약 80%의 시군구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고, 순유입이 큰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일부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 내 거주자의 역외소비 수준을 분석한 연구로 전성범(2014)은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과 민간소비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¹²⁾ 분석결과, 해당 지역은 소비의 유출액이 유입액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 역외소비규모는 약 24조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역내소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①관광인프라의 확충 및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②의료관광산업 활성화, ③지역 농축수산물의 판로확대, ④지역 소비여력 제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자금의 역외유출 관련 연구로 이은규(2011)는 지역기반 금융기관의 부재는 높은 지역소득 및 부가가치가 역내 금융자산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³⁾ 관련하여 김정현·전성범(2015)은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금융의 역외유출도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금융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¹⁴⁾ 분석결과로는 2004~2014년 기간 중 인천과 경기

10) 김시백(2019),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핑, 전북발전연구원.

11) 정재준(2018),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비교를 통한 소득의 역외유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1권 제4호.

12) 전성범(2014),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본 광주전남지역 소비 유출입 현황과 시사점, 광주전남 경제이슈,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3) 이은규 외(2011),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울산지역 금융기능 강화, 지역본부자료, 한국은행 울산본부.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금융 위축으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지역금융생산을 감소시키고 간접적으로 지역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행 강원본부(2007)는 대출금과 예수금 규모의 차이를 토대로 자금의 역외유출률을 추정한 결과, 타지역 평균을 상회하며 주로 금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다.¹⁵⁾

반면, 윤상호(2019)는 소득의 역외유출 현상은 타지역의 자본을 해당 지역에 유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 중 일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며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런 현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¹⁶⁾ 이는 소득의 역외유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지역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까지 보는 기존 연구와는 정반대되는 논리이다. 그에 따르면, 소득 역외유출을 지역경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견해는 지역간 경제적 교류 및 거래가 상호간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14) 김정현·전성범(2015), 광주전남지역 금융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지역본부자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5) 한국은행 강원본부(2007), 강원지역의 자금역외유출 현황 및 시사점, 지역본부자료.

16) 윤상호(2019), 소득의 역외유출이 문제가 아닌 이유, 이슈페이퍼 제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표 2-1〉 관련 연구동향 검토결과 종합

연구자 및 기관	연구목적	분석대상/범위	주요 연구결과
박진도(` 11)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	농촌지역/마을, 공동체	내발적 발전을 위해 생산·유통·소비의 지역경제 내 순환 필요
박 경(` 11)	소득 역외유출 원인 규명	천안·아산/생산, 소비	영업잉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생산과 소득간 괴리 심각
이인로(` 21)	소득 역외유출 및 역외 소비 파악	충남지역경제/분배·지출	소득 역외유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역외소비 비중은 늘어남
허문구 외(` 15)	소득 역외유출 경로 규명	경남지역경제/분배·지출	소득 역외유출의 주된 경로는 직주 불일치로 인한 피용자 보수의 유출임
신동호 외(` 12)	지역경제 선순환 과제 도출	충남 지역 경제 / 생산·분배·지출	전국 최상위 수준의 심각한 소득 역외유출은 분공장과 직주분리 등에 기인함
전성범(` 14)	역외 소비규모 파악	광주전남지역/신용카드 사용액	소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높으며, 순 역외소비규모는 약 24조에 달함
정재준(` 18)	소득 역외유출 현상 분석	시군구/GRDP·GRNI	약 80%의 시군구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GRDP 유출발생
김시백(` 19)	소득 역외유출 수준 파악	전 북 지 역 경 제 /GRDP·GRNI	역외유출 규모는 3.7조원이며, 피용자보수보다 영업잉여 유출비중이 높음
윤상호(` 19)	소득 역외유출의 당위성 도출	전국/근로소득	타지역 자본 유치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 일부가 유출되는 것은 당연함
이은규 외(` 11)	지역 금융기능 강화방안 모색	울산지역/금융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기반 금융기관 설립
김정현·전성범(` 15)	지역 자금역외유출 규모 파악	전국 시도/지역자금	인천, 경기 이외 모든 지역에서 자금의 역외유출 발생, 지역총생산에 부정적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13)	지역 소득역외유출 규모 파악	충남지역경제/분배·지출	분배측면에서 소득 역외유출 규모 24조원, 민간소비비중은 전국 최하위 수준
한국은행울산본부(` 13)	지역 소득역외유출 규모 파악	울산지역경제/분배·지출	분배측면에서 소득 역외유출 규모 25.1조원, 지출측면에서 소비지출 최하위
한국은행강원본부(` 07)	지역 자금역외유출 규모 파악	강원지역/금융	자금의 역외유출률이 타지역 평균을 상회하며, 금융기관과 민간에서 순유출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국내외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문제의식, 연구목적, 분석범위 및 대상, 연구방법, 그리고 주요 연구내용 등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식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의 역외유출을 내발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지역경제 내 선순환을 저해하는 장애요인(bottle neck)으로 그 인식의 궤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문제의식은 기존연구와 동일하나, 역외유출의 개선책 마련에 있어 담론적 수준의 정책대안 제시 보다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둘째, 연구목적으로 기존 연구는 소득 역외유출의 규모 추정, 그리고 역외유출의 원인 및 경로 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법·제도적 영역 내에서 소득의 역외유출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주목적으로 한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는 분석범위 및 대상을 지역경제 순환구조(생산 → 분배 → 지출) 또는 소득분배 및 소비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의 유출·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 및 대상 역시 기존 연구와 동일하나, 소득 역외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존 법·제도를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넷째,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 역외유출의 규모 및 경로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연구(empirical study)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소득 역외유출의 규모 및 경로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연구와 더불어 역외유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측면의 개선사항 및 우선순위 등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및 정책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추진하고자 하고자 한다. 다섯째, 기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요소소득의 분배과정에서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의 역외유출 규모 및 양상, 그리고 유출 경로별 원인규명과 원인별 정책과제 제시 등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영업잉여 및 피용자 보수, 금융자금 등의 역외유출 수준과 양상 파악, 소득 역외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및 정책추진사례 검토, 정책 영역별 법·제도 개선사항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표 2-2〉 기존연구와 본 연구간 비교

구분	기존연구	본 연구
문제의식	· 소득의 역외유출을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애요인(bottle neck)으로 인식	· 기존 연구와 동일하나,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
연구목적	· 소득의 역외유출 규모 및 역외유출 경로 규명 · 소비 역외유출 규모 파악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발굴 등	· 담론적 정책과제 발굴 보다는 법·제도 측면의 근원적 대책 마련 중심
분석범위 및 분석대상	· 지역경제 순환구조(생산 → 분배 → 지출과정) · 영업이익/비용자 보수/소비지출 등	· 지역경제 순환구조 · 소득 역외유출 관련 법·제도(입지, 투자, 소비 등 제 측면)
연구방법	· 실증연구(empirical study) ·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 실증연구(empirical study) ·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 설문조사(survey)
주요 연구내용	· 영업잉여 및 비용자 보수의 역외유출 규모 및 양상 진단 · 유출 경로별 원인규명 · 유출 원인별 정책방향 제시 등	· 영업잉여 및 비용자 보수의 역외유출 규모 및 양상 진단 · 법제도 및 정책추진 사례 검토 · 정책 영역별 법·제도 개선과제 제시

제3장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실태 분석

1. 소득 역외유출 규모 및 추이 분석

1) 생산소득과 분배소득 간 격차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란 말 그대로 소득이 지역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역외유출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과 지역 내로 귀속되는 분배소득간의 격차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과 지역민총소득(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 : GRNI)과의 비교를 통해 도출될 수 있다. 이는 지역내총생산은 생산활동이 일어난 발생지 기준으로 추계하나, 지역민총소득은 본원소득의 수혜자인 거주자 제도단위 또는 제도부문을 기준으로 편제를 하기 때문이다(박경, 2011). 이를 국민경제차원에서 풀이하면 한 국가의 경제주체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급여나 영업이익 등의 소득을 얻게 되며, 이는 다시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 → 분배 → 지출 → 생산으로의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소득의 양은 서로 같아지는데 이를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환율·관세 등의 교역기준이 있는 국가경제와는 달리 지역경제는 지역간 거래에 거의 아무런 제약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역차원에 있어서는 국가와는 다른 생산과 분배, 지출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득의 역외유출은 지역경제 성장의 결과가 지역외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측면에서는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생산소득과 분배소득간의 격차가 어떤지 파악하고, 충남의 소득역외유출입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3-1>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산소득과 분배소득 간 격차인 지역내총생산과 지역민총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도시, 비수도권과 도지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울, 경기 등 대도시권인 광역시의 경우 소득

유입지역으로 나타나며, 광역도의 경우 소득유출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 시점인 2019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충남지역은 지역내총생산대비 20.8%인 23조 6천억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출금액측면이나 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 전라북도가 유출률 17.8%, 유출금액으로는 13조 7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유입지역으로는 액수측면에서는 경제규모가 큰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37조9천억 원, 34조6천억 원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계정을 통한 생산소득과 분배소득과의 차이에 있어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은 울산시를 제외 하고는 지역내생산소득 보다 더 많은 소득이 지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도 지역들은 지역내생산소득이 지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표 3-1〉 지역별 소득 역외유출입 현황(2019년 기준)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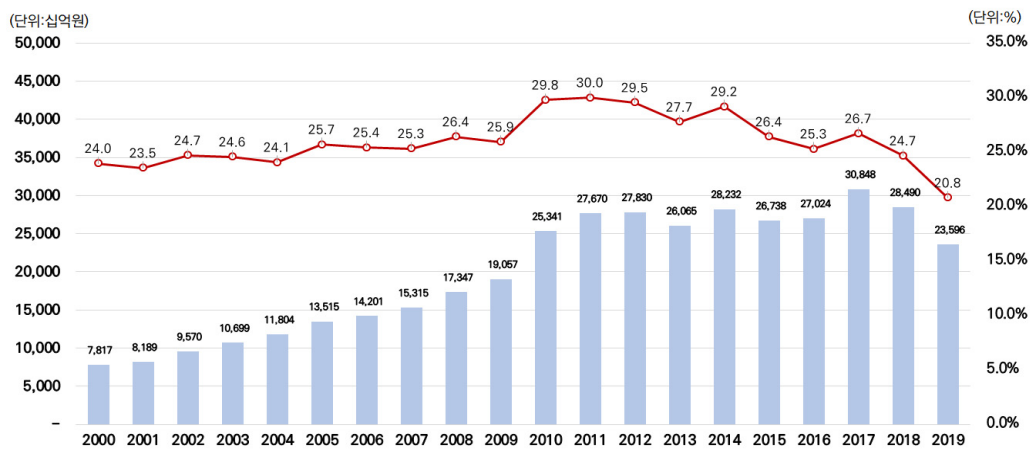
구분	지역내총생산 (a)	지역민총소득 (b)	소득역외유출입 (c)=(b)-(a)	유출(입)률 (c)/(a)×100	유출 순위
서울	435,927,212	470,478,107	34,550,895	7.9	13
부산	93,012,134	98,683,113	5,670,979	6.1	10
대구	58,094,694	67,379,375	9,284,681	16.0	17
인천	90,040,500	96,777,670	6,737,170	7.5	12
광주	41,519,553	46,578,129	5,058,576	12.2	16
대전	43,092,218	47,625,362	4,533,144	10.5	15
울산	74,654,628	62,132,385	-12,522,243	-16.8	4
세종	11,855,276	12,644,683	789,407	6.7	11
경기	477,413,452	515,333,179	37,919,727	7.9	14
강원	48,822,640	44,583,799	-4,238,841	-8.7	6
충북	69,419,635	56,715,604	-12,704,031	-18.3	2
충남	113,488,325	89,892,472	-23,595,853	-20.8	1
전북	51,997,535	51,037,372	-960,163	-1.8	8
전남	76,948,280	63,245,921	-13,702,359	-17.8	3
경북	106,805,459	93,363,614	-13,441,845	-12.6	5
경남	114,020,931	107,306,055	-6,714,876	-5.9	7
제주	20,308,737	20,254,268	-54,469	-0.3	9

주 : 당해연도 가격기준이며, 유출(입)률은 +는 유입, -는 유출을 말함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

2) 충남의 소득역외유출 변화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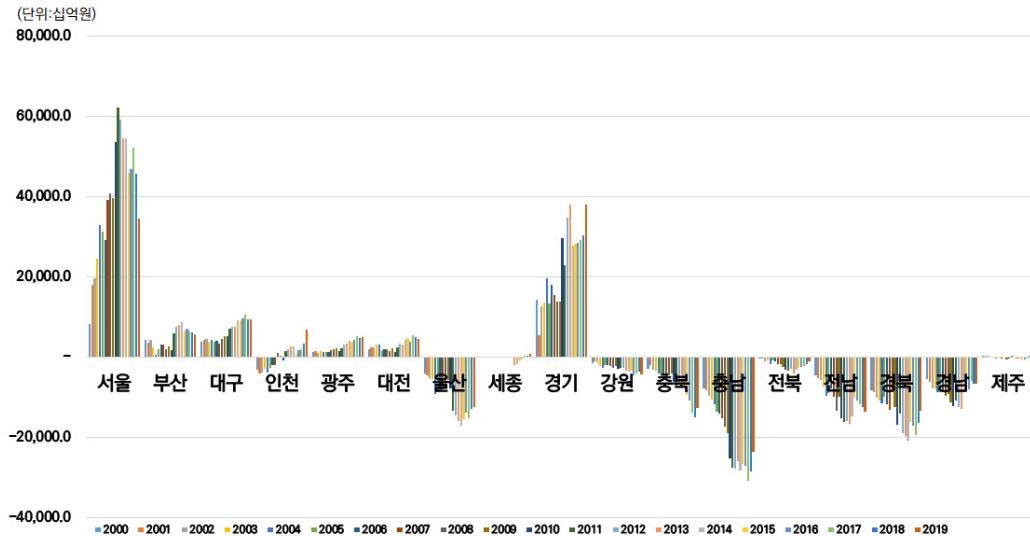
2019년 기준 통계지표에 있어 충남의 역외유출률과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계열을 최대한 연장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현재 지역총생산에 대한 데이터는 1985년부터 작성되고 있지만, 지역총소득에 대한 자료는 2000년부터 작성되고 있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3-1] 충남의 역외 소득유출 현황(금액, 비율)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충청남도 2000년 지역내총생산은 32조 6천억원 그리고 지역민총소득은 24조 8천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소득순유출액은 7조 8천억원으로 지역내총생산의 24.0%에 해당하고 있다. 이후 충남의 역외유출은 점차 확대되어서 2011년 소득순유출액은 지역총생산의 30.0%까지 육박하게 되었고, 유출액 역시 27조 7천억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갱신하였다. 이후 2019년까지 유출률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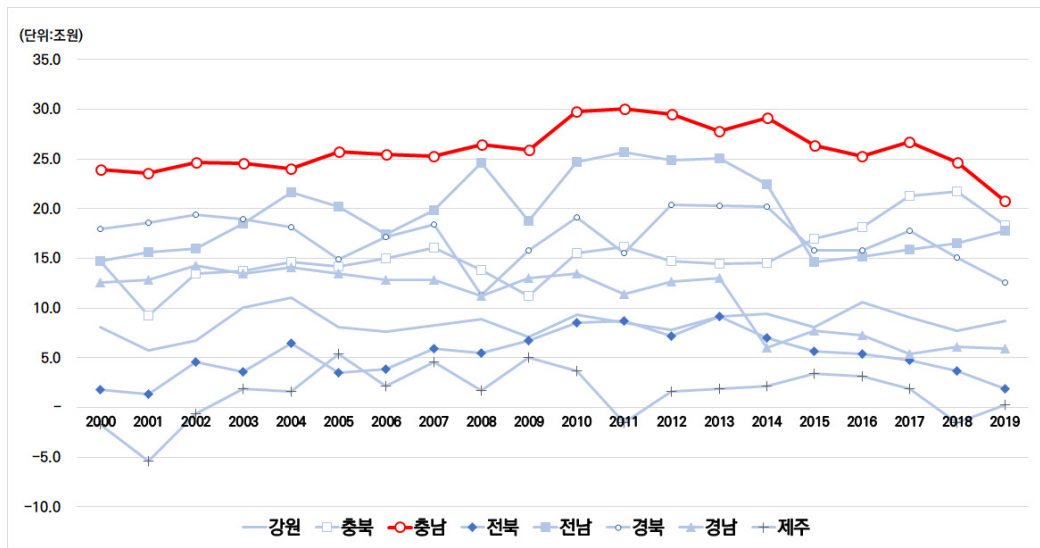


[그림 3-2] 시도별 역외 소득유출액 추이(2000~2019)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그림 3-2]는 우리나라 전체 17개 시도에 대해 2000년 이후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입규모에 대해 제시한 그림이다. 지역별 소득 유출입 규모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유입지역으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부분은 점유하고 있으며,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도로 유입이 되고 있다. 유출지역은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 모두가 해당하고 있다. 다행히 2011년 이후 유출지역의 유출액 규모가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성장률 둔화로 인한 저성장으로 인해 그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것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소득유출이 많은 도 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의 지역내총생산대비 유출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큰 변동 없이 지속적인 역외 소득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3-3].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는 통계청에서 분배지역소득을 발표한 2009년 이래로 다양한 측면에서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소득의 역외유출이와 혼잡비용이나 환경문제와 같은 외부불경제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강익, 2011).



[그림 3-3] 도 지역(경기도 제외)의 역외 소득 유출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그러나 지역의 총생산 및 총소득 측면의 분석만 가지고는 지역 내에서 생성된 부가가치가 요소소득별로 어느 정도 역내에 흡수되는지를 가늠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외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역내에서 생산된 소득이 지역 내주민이나 기업들에게 귀속되지 못하고 유출되고 있는 소득의 구성요소와 유출경로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역외 소득유출에 대한 생산계정과 분배계정을 통해 세부적인 요소소득별 분석을 통해 그 구성요소와 유출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2〉 지역내총산(GRDP) 대비 소득유출률

[단위 : %]

시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5.0	10.1	9.9	11.6	15.0	13.5	11.9	14.7	14.5	13.5	17.1	19.0	17.7	16.0	15.6	12.4	12.1	12.9	10.8	7.9
부산	11.7	8.7	10.0	4.8	1.2	3.6	5.8	5.3	3.0	4.3	2.6	8.6	10.6	10.8	11.2	7.6	8.3	7.6	6.9	6.1
대구	16.2	17.0	16.7	13.6	13.5	12.1	12.1	9.1	11.8	13.6	12.9	16.4	16.7	16.1	18.6	17.5	18.3	19.1	16.6	16.0
인천	-10.5	-12.1	-9.9	-7.4	-8.5	-6.0	-3.9	-3.5	1.9	0.1	-1.2	2.4	3.0	3.9	3.5	0.9	2.0	2.3	3.9	7.5
광주	9.2	9.5	6.9	8.1	6.8	6.6	6.1	7.8	8.2	8.7	5.0	7.6	10.1	10.6	12.4	11.0	11.7	13.9	11.7	12.2
대전	13.1	15.3	13.1	15.2	14.4	7.4	8.6	8.2	6.0	7.5	4.5	7.5	10.3	9.5	12.5	12.6	9.8	13.5	12.2	10.5
울산	-13.3	-13.9	-14.6	-15.0	-21.0	-20.1	-18.0	-16.0	-14.4	-11.1	-12.8	-19.6	-20.7	-22.3	-24.5	-21.1	-18.5	-20.1	-17.4	-16.8
세종														-30.0	-21.1	-10.1	-3.6	2.1	1.8	6.7
경기	11.7	4.1	8.4	8.2	11.0	7.0	8.7	7.0	5.9	5.6	10.7	7.8	11.1	11.4	7.9	7.4	7.0	6.5	6.3	7.9
강원	-8.1	-5.7	-6.7	-10.1	-11.1	-8.1	-7.7	-8.2	-8.9	-7.1	-9.4	-8.5	-7.9	-9.2	-9.4	-8.1	-10.6	-9.1	-7.7	-8.7
충북	-14.7	-9.2	-13.4	-13.7	-14.6	-14.2	-15.0	-16.1	-13.8	-11.3	-15.5	-16.2	-14.7	-14.5	-14.5	-17.0	-18.1	-21.3	-21.7	-18.3
충남	-24.0	-23.5	-24.7	-24.6	-24.1	-25.7	-25.4	-25.3	-26.4	-25.9	-29.8	-30.0	-29.5	-27.7	-29.2	-26.4	-25.3	-26.7	-24.7	-20.8
전북	-1.8	-1.3	-4.5	-3.6	-6.4	-3.5	-3.9	-6.0	-5.5	-6.8	-8.5	-8.7	-7.2	-9.2	-7.0	-5.6	-5.4	-4.7	-3.6	-1.8
전남	-14.7	-15.6	-15.9	-18.5	-21.7	-20.2	-17.4	-19.8	-24.6	-18.8	-24.7	-25.6	-24.8	-25.0	-22.5	-14.6	-15.2	-15.9	-16.5	-17.8
경북	-17.9	-18.5	-19.4	-19.0	-18.2	-14.9	-17.1	-18.4	-11.4	-15.8	-19.2	-15.5	-20.4	-20.3	-20.2	-15.8	-15.8	-17.8	-15.1	-12.6
경남	-12.6	-12.8	-14.3	-13.5	-14.1	-13.5	-12.8	-12.9	-11.2	-13.0	-13.5	-11.4	-12.6	-13.0	-6.1	-7.8	-7.3	-5.4	-6.1	-5.9
제주	1.7	5.3	0.6	-1.9	-1.6	-5.4	-2.1	-4.6	-1.7	-5.1	-3.7	1.5	-1.6	-1.9	-2.2	-3.4	-3.1	-1.9	1.5	-0.3

주 : 지역별 규모에 있어 +는 역외유입을, -는 역외유출을 의미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2. 영업잉여 및 피용자보수 유출입 분석

1) 지역계정을 활용한 소득 유출 요소 분석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경로는 분배소득계정상 다음의 3가지 경로로 대별된다. 첫째 기업의 본사와 지점(또는 분공장)구조로 인한 영업잉여의 이전을 통한 유출, 둘째, 교통의 발달과 교육환경·생활환경 선호를 통해 나타나는 직주불일치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유출, 셋째 지역경제의 개방성에 기인한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투자활동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재산소득의 이전 등이 그것이다(허문구외, 2015). 지역소득 역외 유출에 대한 측정은 명확한 이론이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계정상의 생산계정과 분배계정을 활용하면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지역내총생산(GRDP)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 즉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통계청, 2021). 지역민총소득(GRNI)은 지역내 총생산에서 역외로부터 수취한 본원소득을 더하고 지역외로 지급한 본원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총본원소득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지역외로부터의 유입과 유출을 모두 계상한 것이 바로 역외 순수취본원소득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과 지역민총소득은 지역외 순수취본원소득의 크기만큼 차이가 발생하며, 이 크기는 지역소득의 유출 또는 유입의 규모와 일치한다. 결국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이 지역내 귀속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지, 반대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이 지역내로 유입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외 순수취본원소득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래[그림3-4]와 같이, 역외 순수취본원소득은 지역민총소득(GRNI)과 지역내총생산(GRDP) 간 차이로 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양의 값을 가질 경우는 역외로부터의 소득 유입을, 음의 값을 가질 경우 역외로의 소득유출을 나타낸다¹⁷⁾.

17) 지역민총소득 > 지역내총생산일 경우 역외로부터의 소득 순수입, 지역민총소득 < 지역내총생산일 경우는 역외로부터의 소득 순수출이 발생한다.

산출액	지역내총생산(GRDP)					중간 소비
지역내총생산 (GRDP)	비용자 보수		영업 잉여	순생산세	고정 자본 소모	
	요소소득					
지역내순생산	비용자 보수		영업 잉여	순생산세		
	요소소득					
지역민총소득 (GRNI)	순수취 요소소득	순수취 재산소득	비용자 보수	영업 잉여	순생산세	고정 자본 소모
	역외 순수취본원소득		요소소득			
지역민순소득	순수취 요소소득	순수취 재산소득	비용자 보수	영업 잉여	순생산세	
	역외 순수취본원소득		요소소득			

[그림 3-4] 지역계정의 구성 요소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재인용(2013)

여기서 순수취본원소득은 순수취요소소득(비용자보수+영업잉여)과 순수취재산소득(이자배당금)과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료와 같은 실물소득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역외 순수취본원소득 = 요소소득 + 재산소득			
역외 순수취요소소득		역외 순수취재산소득	
비용자보수 (현행 미편제)	영업잉여 (현행 미편제)	금융소득 (이자, 배당)	실물소득 (임료)
(발생지 기준 생산계정) 요소소득		원천재산소득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금융소득 (이자, 배당)	실물소득 (임료)
(거주지 기준 분배계정) 요소소득		사용자재산소득	

[그림 3-5] 지역외 순수취본원소득의 구성요소

출처 : 정준호(2012), 허문구외(2015)에서 재인용

한편, 재산소득은 금융소득(이자, 배당금)과 실물소득(임료)으로 나누는데, 타 지역에서 거래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나 배당액이 거주지인 당해 지역으로 이전되는부분에서 당해 지역에서 거래된 이자나 배당액이 타 거주지로 이출되는 부분을 상계하면 순수취 재산소득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취(원천)재산소득에서 지급(사용)한 재산소득을 차감하여 순재산소득을 산정하였다.

〈표 3-3〉 시도 계정별 역외 유출액(2019년 기준)

[단위 : 십억 원]

구분	순유출 (a)=(b)+(c)	요소소득			재산소득		
		(b)	파용자보수	영업잉여	(c)	사용	원천
서울	34,551	39,968	22,682	17,285	-5,417	200,497	205,913
부산	5,671	4,049	3,014	1,035	1,622	18,443	16,821
대구	9,285	6,676	4,940	1,736	2,609	12,201	9,592
인천	6,737	7,147	5,380	1,767	-410	10,531	10,941
광주	5,059	3,277	2,553	724	1,781	6,657	4,876
대전	4,533	3,337	2,528	809	1,196	8,497	7,301
울산	-12,522	-12,841	-10,205	-2,636	319	4,517	4,198
세종	789	310	248	62	479	2,390	1,910
경기	37,920	33,051	22,192	10,859	4,869	64,407	59,538
강원	-4,239	-6,318	-4,905	-1,413	2,079	7,012	4,933
충북	-12,704	-14,062	-10,446	-3,616	1,358	6,406	5,048
충남	-23,596	-23,553	-16,297	-7,256	-43	8,439	8,482
전북	-960	-3,864	-2,928	-936	2,904	8,061	5,157
전남	-13,702	-15,256	-10,526	-4,730	1,554	8,141	6,588
경북	-13,442	-13,921	-9,106	-4,814	479	10,210	9,732
경남	-6,715	-8,260	-5,901	-2,358	1,545	13,967	12,423
제주	-54	-737	-515	-223	683	3,332	2,649

주) 지역별 유출입에 있어 +는 역외유입을, -는 역외유출을 의미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위 <표3-3>은 시도별 역외유출액을 계정별로 추정한 것이다. 먼저, 지역 소득유출을 순수취재산소득과 순수취요소소득으로 나눠 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역외유출입을 결정하는 것이 순수취요소소득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외유출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순수취재산소득보다는 순수취요소소득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중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은 요소소득을 구성하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운데 서울시는 영업잉여의 유입이 타 지역보다 평균 10%p이상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업이익의 크기는 기업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는 대비적으로 충남, 전남, 경북의 경우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비중이 타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내 분공장형태의 대기업의 입지로 인해 영업잉여의 유출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충남지역을 별도로 계정별 역외 유출규모를 시계열적으로 추정한 것이 <표3-4>이다.

〈표 3-4〉 충남의 계정별 역외 유출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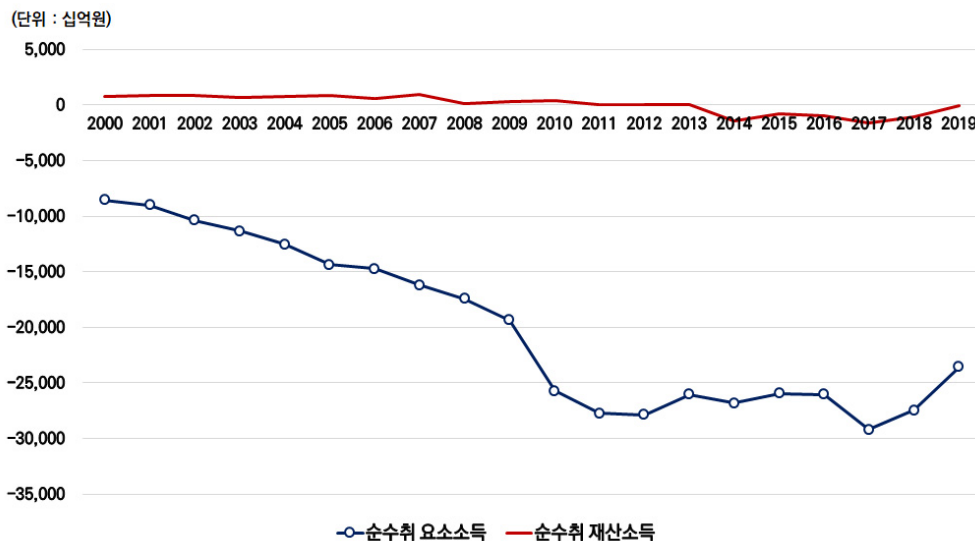
[단위 : 십억 원]

구분	순유출 (a)=(b)+(c)	순수취 요소소득			순수취 재산소득		
		(b)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c)	사용	원천
2000	-7,817	-8,541	-4,856	-3,685	724	4,549	3,824
2001	-8,189	-8,996	-5,348	-3,648	807	4,469	3,662
2002	-9,570	-10,376	-6,183	-4,193	805	4,237	3,431
2003	-10,699	-11,350	-6,870	-4,480	651	4,304	3,653
2004	-11,804	-12,536	-7,178	-5,357	732	4,384	3,652
2005	-13,515	-14,365	-8,741	-5,624	849	4,869	4,020
2006	-14,201	-14,751	-9,124	-5,626	549	5,416	4,867
2007	-15,315	-16,222	-10,105	-6,117	907	6,318	5,411
2008	-17,347	-17,444	-11,504	-5,940	97	6,582	6,485
2009	-19,057	-19,340	-12,125	-7,215	283	6,837	6,554
2010	-25,341	-25,718	-16,251	-9,466	376	7,845	7,469
2011	-27,670	-27,735	-16,958	-10,776	64	7,773	7,709
2012	-27,830	-27,883	-18,265	-9,619	53	7,712	7,659
2013	-26,065	-26,055	-16,830	-9,225	-10	6,905	6,915
2014	-28,232	-26,835	-17,877	-8,958	-1,397	7,148	8,545
2015	-26,738	-25,942	-16,508	-9,433	-796	7,078	7,874
2016	-27,024	-26,055	-16,264	-9,791	-969	6,944	7,913
2017	-30,848	-29,218	-18,440	-10,778	-1,630	7,681	9,312
2018	-28,490	-27,457	-18,343	-9,114	-1,033	7,944	8,977
2019	-23,596	-23,553	-16,297	-7,256	-43	8,439	8,482

주) 계정별 유출입에 있어 +는 역외유입을, -는 역외유출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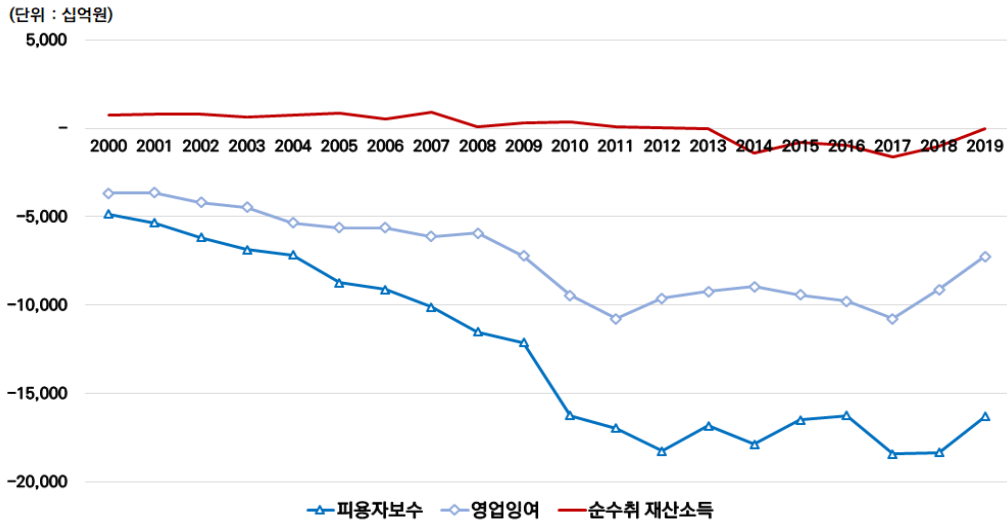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충남도의 역외유출액은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0년 7조 8천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0조원을 넘긴 이후 2019년까지는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출액의 감소는 실제로 역외유출이 감소했다기 보다는 최근의 지역내 산업생산 둔화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 전반이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시계열적으로 영업잉여의 유출 증가율이 피용자보수 유출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순수취요소소득 중 피용자보수 유출부분은 2000년 56.9%에서 2019년 69.2%으로 증가했고 영업잉여 유출부분은 2000년 43.1%에서 2019년 30.8%로 감소하였다. 반면, 재산소득의 경우 2013년 이후로 소득유출규모가 소폭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순유출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전국과 마찬가지로 순수취재산소득 보다는 순수취요소소득이 역외 소득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요소소득과 재산소득의 역외유출 규모와 변화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그림 3-7]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의 역외유출 규모와 변화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2) 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의 역외 유출입 분석

통계청에서 작성·제공하고 있는 지역총소득 및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역외유출규모는 각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유출규모는 파악이 가능하나, 유출흐름의 방향은 파악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앞 절의 분석결과 충남지역의 역외 유출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소득이 어떤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소득이 주로 어떤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분석에 사용할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는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표본을 설계하고 급여, 직종, 연령 등의 고용상황과 연관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조사항목에 근로자들의 거주지와 근무지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별 근로소득비율규모(역내근로소득+역외근로소득) 및 유출규모(근로자의 거주지 및 근로지 불일치)와 유출지역을 구분하여 추정이 가능하며 그 비율도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지역단위의 소득의 유출흐름을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별고용조사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고, 조사항목 가운데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지역의 역외유출을

계산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외 소득 유출과 원인이 되는 거주지와 근로지가 분리된 근로소득, 즉 직주분리의 실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요 유출입지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본 자료에서의 근무지는 충남지역이나, 거주지가 충남의 지역 근로자들의 소득을 소득유출로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역외로부터 유입되는 역외소득과 역내소득을 계산하여 각각의 유출율과 유입율을 산정하였다. 근로자의 근무지역(회사소재지)과 거주지역 구분에 따른 근로소득 자료를 토대로 직주분리 및 근로소득 유출·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3-8]과 같은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아래 그림을 모형처럼 역외 근로소득 유출률은 역외유출(C)에 대해 역내소득(A)과 소득유출(C)을 합한 값의 비율로 나타내며, 역외근로소득유입률은 역외소득(B)에 대한 역내소득(A)과 소득유출(C)을 합한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 순유출 비정을 구할 수 있는데 역외소득(B)과 소득유출(C)의 차를 역내소득(A)로 나누면 도출 된다¹⁸⁾.

〈거주지기준〉

〔근무지〕		충남지역 거주자	충남 외 거주자	합계
	충남지역	A(역내소득)	C(소득유출)	A+C
	충남 외 지역	B(역외소득)		
	합계	A+B		

[그림 3-8] 근로소득 유출입 실태 분석 모형

18) 각각에 대해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역외 근로소득 유출률 : $\text{소득유출(C)} / \text{역내소득(A)} + \text{소득유출(C)}$

** 역외 근로소득 유입률 : $\text{역외소득(B)} / \text{역내소득(A)} + \text{역외소득(B)}$

*** 근로소득 순유출 비중 : $\text{역외소득(B)} - \text{소득유출(C)} / \text{역내소득(A)}$

〈표3-5〉은 앞의 모형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의 역외 근로소득 유출입 비중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먼저 역외 근로소득 유출률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다 2015년 이후 소폭 감소세를 거쳐 최근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내포신도시로 도청이전과 맞물려 근로자의 직주불일치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역외근로소득 유입률은 다소 변동은 보이고 있지만 역외 근로소득 유출률보다는 큰 변동 없이 소폭 증가세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역외근로소득 유출의 증가세가 유입률보다 높아 전체적인 근로소득 순유출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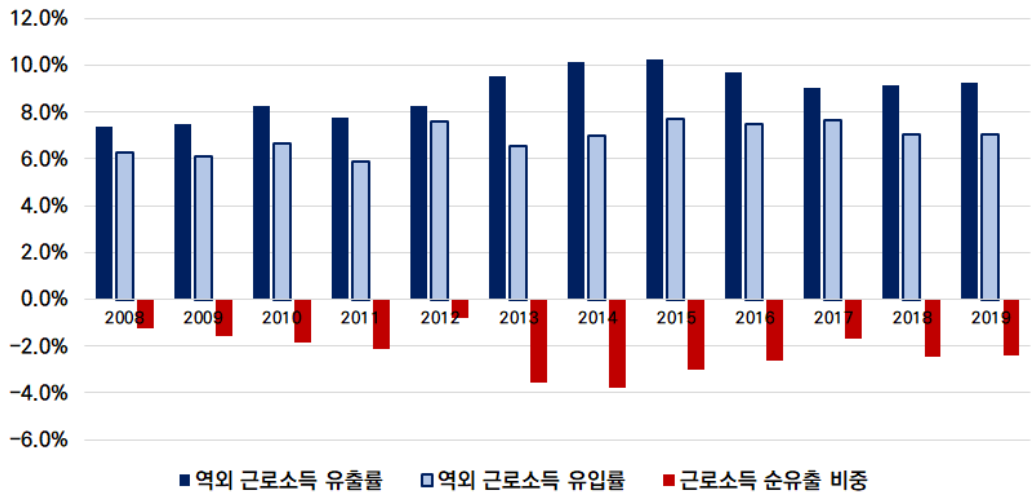
〈표 3-5〉 충남의 근로소득 유출입 비중

[단위:%]

구분	역외 근로소득 유출률	역외 근로소득 유입률	근로소득 순유출
2008	7.38	6.30	-1.25
2009	7.48	6.10	-1.59
2010	8.24	6.67	-1.83
2011	7.77	5.91	-2.14
2012	8.25	7.58	-0.79
2013	9.53	6.52	-3.56
2014	10.14	6.99	-3.78
2015	10.23	7.72	-3.04
2016	9.68	7.49	-2.62
2017	9.06	7.67	-1.66
2018	9.14	7.07	-2.45
2019	9.26	7.07	-2.41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2019), MDIS

앞서 분석한 통계청의 지역소득계정을 통한 분석에 있어서도 피용자보수의 유출액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별고용조사의 역외 근로소득 유출률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통계의 특성상 그 규모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역외 근로소득 유출이 확대되어 가는 방향성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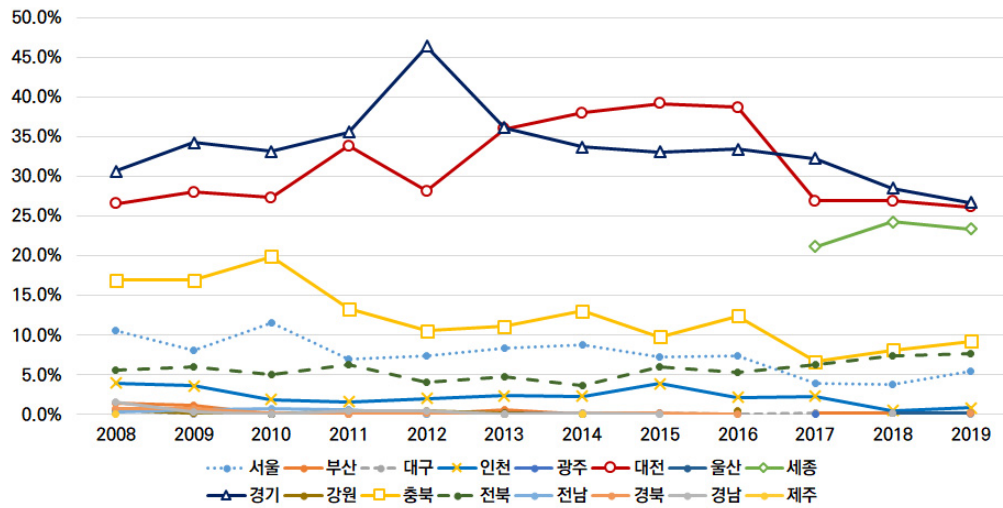


[그림 3-9] 충남의 근로소득 유출입 비중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2019), MDIS

충남에서의 근로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지역을 선형적으로 유추해보면, 충남 북부권처럼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나 대전·세종과 같은 대도시 인근 지역으로의 유출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분석결과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측이 대부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지역의 근로소득 유출 경로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경기 26.7%, 대전 23.2%, 세종 23.4%, 충북 9.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고용조사가 발표된 2008년에는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3년 이후는 대전지역으로의 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세종시의 큰 폭의 유출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종시의 급성장과정에서 충남뿐만 아니라 대전지역의 인구까지 함께 유입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전으로의 유출률은 큰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8년 이후 근로소득의 역외유출은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와 대전시 중심의 유출에서 현재는 세종시의 성장으로 인해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대전·세종지역으로의 유출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경기지역으로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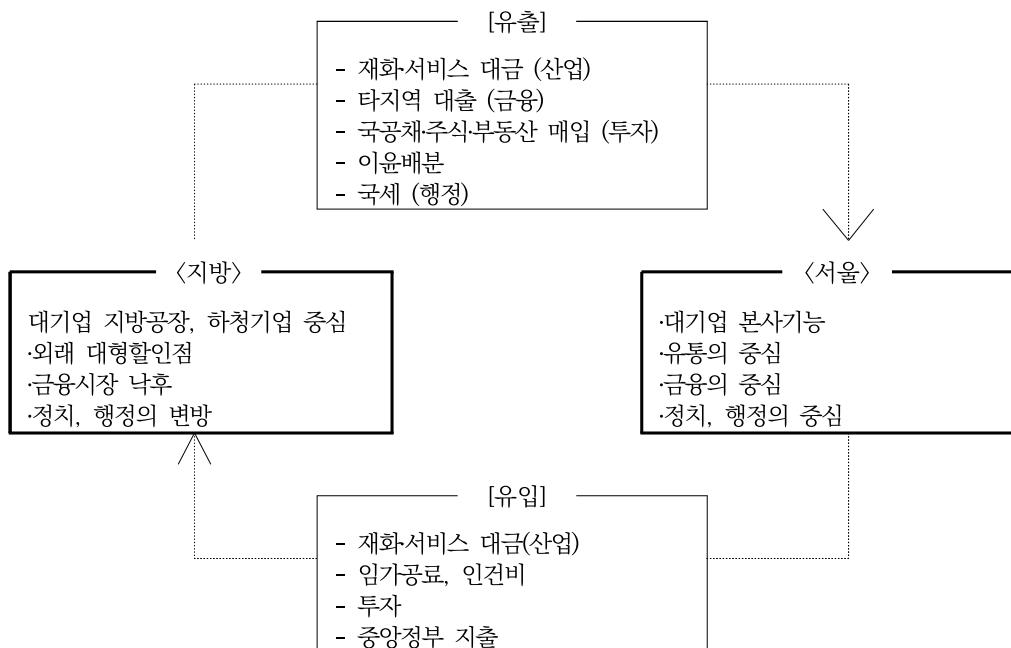
[그림 3-10] 충남의 근로소득 지역별 유출 비중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2019), MDIS

3. 지역자금 및 소비 유출입 실태

1)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입

지역자금 역외유출은 금융 및 생산 활동을 통해 조성된 자금중 지역의 경제활동에 재투입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순유출된 것을 의미하며 크게 금융경로, 산업경로, 재정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한국은행 전북본부, 2010). 여기서 금융경로는 실물거래 동반 없이 지역 금융기관이 수신자금을 지역외 기업에게 대출해주거나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유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경로는 본사와 지사 또는 지방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금운용을 서울에서 하는 경우와 지역소재 기업이 원자재·생산설비 등을 타 지역에서 구매함으로써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재정 경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징수한 세금이 지출보다 많다면 이 역시 자금유출을 가져온다.



[그림 3-11] 역외 자금유출입 경로

자료 :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역외유출현황 및 시사점, 2010.2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자금의 지역간 이동은 개별경제주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지역으로의 자금집중 및 지역간 자금편재는 오히려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제약하게 된다. 역외유출률¹⁹⁾은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자금 중에서 대출로 운용되지 않은 비율로 정의되는데 대출로 운용되지 않은 부분은 통상 동 자금이 본점에 집중되어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투자로 운용되므로 직접금융 조달이 미약한 지역기업으로 환류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한국은행 강원본부, 2007).

2020년 기준으로 충남지역의 금융기관의 자금역외유출 규모는 19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GRDP대비 규모에 있어서는 17.5%수준에 해당하고 있다. 자금의 역외유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GRDP대비 역외유출이 높은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황

[단위 : 십억원, %]

구분	수신(a)	여신(b)	여수신차 (a)-(b)	역외유출률 (a-b)/(a)	GRDP 대비 비중
경기	584,394	571,569	12,825	2.2	2.7
강원	71,000	43,233	27,767	64.2	56.9
충북	74,615	53,315	21,300	40.0	30.7
충남	95,536	75,662	19,874	26.3	17.5
전북	100,356	63,629	36,726	57.7	70.6
전남	92,984	55,525	37,459	67.5	48.7
경북	126,940	88,503	38,437	43.4	36.0
경남	152,150	132,426	19,724	14.9	17.3
제주	36,149	34,619	1,530	4.4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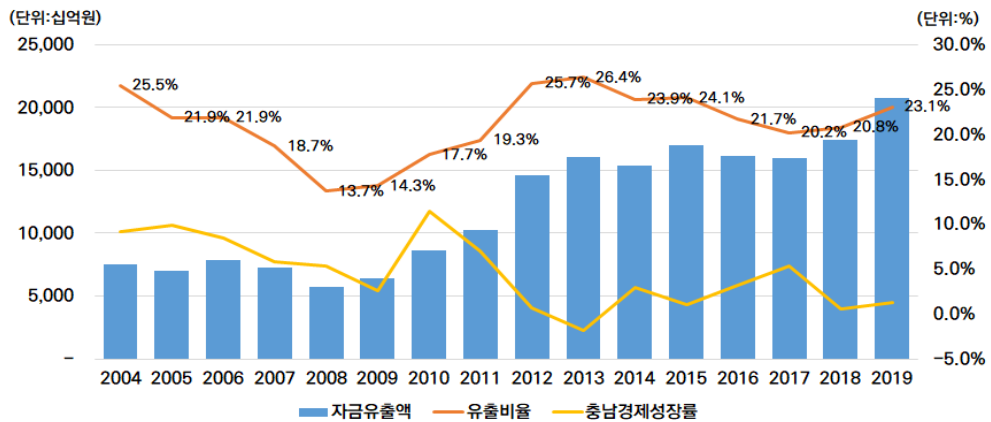
주1) 금융기관(예금은행+비은행기관+생명보험)의 수신액-여신액으로 +면 역외유출, -면 역외유입임

2) 여수신자료는 2020년 자료이며, GRDP자료는 2019년 자료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19) 금융자금의 역외유출률 = (수신액-여신액)/수신액

지역내 역외유출이 지역내 수신(예금)대비 여신(대출)에 대한 비율로 역외유출이 높다는 것은 지역내 금융기관의 총 수신중에서 지역내 여신으로 일부밖에 운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충남지역의 자금 역외유출률을 살펴보면 2004년 25.5%에서 2008년 13.7%까지 감소하였다가 2013년 이후는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별다른 개선 기미가 없는 모습이다. 충남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보면 약간의 시차는 가지고 있지만,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역외유출이 적은 시기는 이후 경제성장률에 있어 증가를 나타낸 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시기는 역외유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금의 역외유출은 지역의 경제 성장에 있어 성장을 제약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2] 충남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현황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2) 지역 소비의 역외유출입실태²⁰⁾

지역차원에서 개인의 소비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통계는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지역간 소비동향에 대한 통계는 중요성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미시통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개략적이거나 가게의 소비지출행태를 파악하는데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특정지역의 거주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특정 지역의 가맹점에서 소비·지출을 한다는 측면에서 소비규모뿐만 아니라 지역간 소비동향 등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절에서는 신용카드²¹⁾ 소비데이터를 활용하여 충남지역 거주자의 소비동향과 소비부분에서의 역외유출을 분석하였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소비의 역외유출 분석 틀은 [그림3-13]과 같이 앞서 근로소득의 역외유출을 분석한 것과 같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소속지역〉				
〈신용카드 이용지역〉		충남지역 거주자	충남 외 거주자	합계
	충남지역	A(역내소비)	C(소비유입)	A+C
	충남외지역	B(역외소비)		
	합계	A+B		

[그림 3-13] 역내소비, 역외소비 및 소비 유입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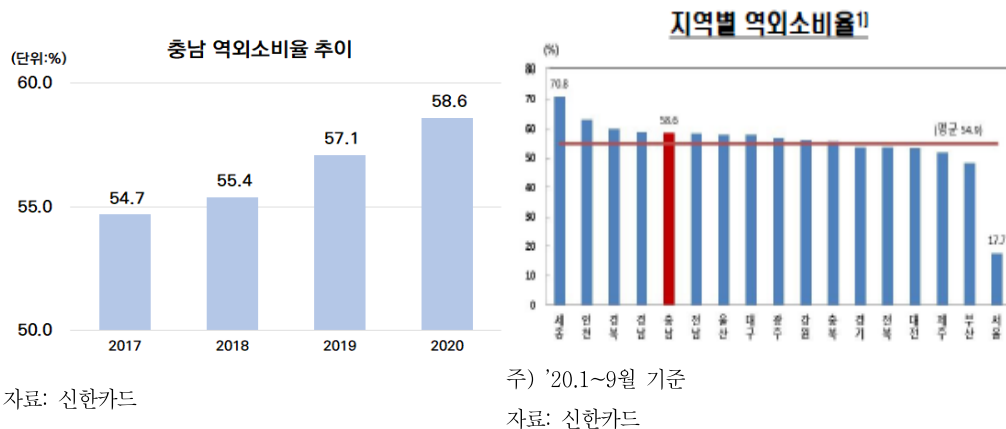
출처 : 이인로, 충남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및 거주자의 역외소비, 2021

20) 이인로, 충남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및 거주자의 역외소비, 충청남도 경제발전전략 전문가 컨설팅 회의자료(2021.3.11.)를 재정리 한 내용이다.

21) 한국은행이 신한·하나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입수한 지역별 신용카드 결제정보(2017~2020), 2019년 전국 민간소비 규모 대비 신한·하나카드의 카드결제액 비율은 18.6%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분석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 거주자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비 지출액으로 간주하여 분석 하였고, 여기서 역외소비는 충남지역 거주자가 충남 외 지역에서 소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소비유입(C)은 충남지역외 거주자가 충남지역내 소비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모형을 통해 역외소비율, 소비유입률, 소비순유출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²²⁾.

충남지역 역외소비율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충남은 세종, 인천, 경북, 경남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역외소비율은 충남지역 전체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충남거주자가 충남외 지역에서 소비한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57.1%는 충남거주자가 충남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소비한 비중을 의미한다. 분석된 2017년 이후 충남의 역외소비율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충남지역 역외소비율 변화 추이 및 지역별 역외소비율 현황

출처 : 이인로, 충남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및 거주자의 역외소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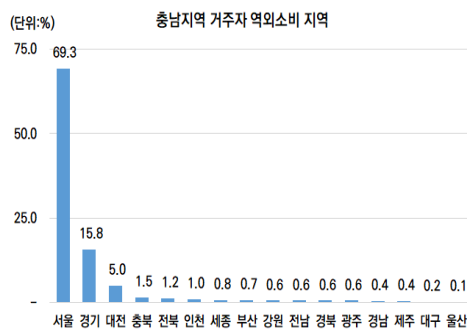
22) 각각에 대해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역외소비율 : 역외소비(B) / 역내소비(A) + 소비유입(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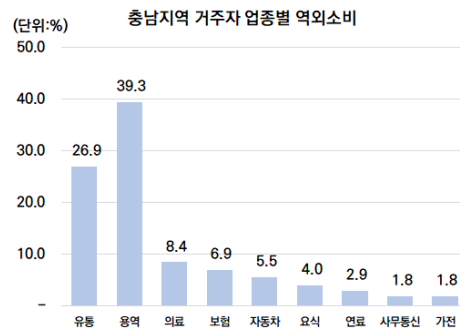
** 소비유입률 : 소비유입(C) / 역내소비(A) + 소비유입(C)

*** 소비순유출비율 : 역외소비(B) - 소비유입(C) / 역내소비(A)

충남의 역외소비율과 함께 중요한 것이 소비지역이다. 분석에 있어서는 충남지역 거주자의 가장 큰 역외소비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대전, 충북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를 합쳐서 전체의 85.1%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커머스 업체가 대부분 서울과 경기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전·충북·전북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측면으로 인해 역외소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는 유통, 용역, 의료, 보험, 자동차 순으로 역외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신한카드, '20.1~9월 기준



자료: 신한카드

[그림 3-15] 충남지역 거주자의 역외소비 지역 및 업종별 소비

출처 : 이인로, 충남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및 거주자의 역외소비, 2021.

4. 시사점

첫째, 충남지역의 소득역외유출규모는 전국 최대이며, 최근까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다만, 최근 자소 역외유출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충남의 경제성장을 둔화세의 영향).

둘째, 역외로 유출되는 소득을 계정별로 구분해보면 요소소득(피용자보수 + 영업잉여)과 재산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요소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소소득 중 피용자보수 유출부분은 2000년 56.9%에서 2019년 69.2%로 증가했고 영업잉여 유출부분은 2000년 43.1%에서 2019년 30.8%로 감소해 최근 들어 피용자보수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셋째,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의 역외유출(순유출)은 2008년 -1.25%에서 2019년 -2.41%로 확대되고 있다(2013년에서 2015년까지 순유출이 -3.78%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때 충남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인 충격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 한편, 근로소득의 역외유출 경로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경기 26.7%, 세종 23.4%, 대전 23.2%, 충북 9.3% 등의 순으로 대전·세종지역이 역외유출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2008년 당시에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 유출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대전과 세종지역으로 변화).

넷째, 지역자금의 유출입에 있어서는 2020년 기준으로 19조 7천억원이며, 충남 GRDP의 17.5%수준에 해당하고 있어 다른 도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25.5%에서 2008년 13.7%까지 감소하였다가 2013년 이후는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별다른 개선 기미가 없는 양상이다.

끝으로, 자금유출과 경제성장률과는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자금의 역외유출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하여 역외 소비율은 2017년 54.7%에서 2019년 5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도 중에서는 세종, 인천, 경북, 경남에 이은 5위로 나타났다. 주요 역외소비지역으로는 서울과 경기이며, 이는 온라인 커머스 업체를 통한 상품의 구입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소득 역외유출 완화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추진사례

1. 관련 법·제도 현황

1) 국가법령 제정·운용 현황

소득 역외유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차원의 법령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는 생산, 고용, 소비, 투자, 정주환경, 금융, 기타 등 총 7개 부문에서 8개 법령, 행정규칙 3개, 제도 1개, 그리고 제정예정 중인 법률안 3개 등을 제정·운용하거나 발의 중에 있다.²³⁾ 7개 부문별 법제(행정규칙 포함)가 지역의 소득역외유출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부문에서 지역 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조성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의거하는 바, 특히 소재·부품은 최종재 완성에 필요한 중간재적 성격이 강해 해당 지역의 역내조달비중을 높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고용부문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직주분리(職住分離)현상을 완화시키는 법률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및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의거하여 이전 공공기관 등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²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대전 17개소, 세종 20개소, 충북 11개소, 충남 3개소가 소재하며,

23) 각 법령별로 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별 조항을 고려하여 정리하였음

24) 지역인재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대학 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이 중 충남도 내 소재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있다.

셋째, 소비부문에서 지역 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간 연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는 법률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투자부문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거나 지역 자금의 역내 재투자 등을 통해 지역경제순환에 기여하는 법제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대한 행정규칙’,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 그리고 현재 발의 중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소득 역외유출 지역이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의 시·군·지역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현지법인을 설립한 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²⁵⁾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이 필요한 바, 구체적으로 동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는 바, 소득 역외유출 지역에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규모를 확대시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 기금법(안)의 발의배경은 국내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은 지역 재투자 비율이 낮아 지역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약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²⁶⁾

25)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의미함

26) 동 법에서 지역 재투자란 지방자치단체나 금융회사 등이 지역의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출연 및 기부를 하고 그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지역의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표 4-1]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 개요

구분	주요내용
평가 대상	· 15개 은행(시중 6, 특수 3, 지방 3), 12개 저축은행
평가 지역	·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
평가 근거	·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⑩ 및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40조의 2④
평가 항목	· 정량평가 : 지역자금 역외유출(자금공급), 중소기업 및 서민대출 지원, 인프라 투자 · 정성평가 : 코로나 19관련 금융지원 등 지역금융 지원전략
평가 절차	· 정량평가(금감원), 정성평가(지자체 추천위원)결과를 산정하고 민간위원장, 금융위·행안부·금감원·금융연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보고를 통해 결과 확정

이에 국내에서는 지역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가 2018년에 도입되었다. 지역 재투자 평가부문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부문의 평가항목은 ①지역별 예대율, ②지역경제 대비 여신 괴리율, ③지역 여신 증가율 등이다. 2021년 기준으로 지역별 점수에 따라 평가등급 부여 후 이를 평균하여 최종 평가등급 산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²⁷⁾

27) 최종등급으로 최우수는 4.0초과, 우수 3.5초과~4.0이하, 양호 3.0초과~3.5이하, 다소 미흡 2.5초과~3.0이하, 미흡 2.5이하임

[표 4-2] 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21)

구 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종 등급
신 한	우수	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	최우수	최우수	양호	양호	다소미흡	양호	양호	우수	우수
우 리	우수	우수	양호	양호	다소미흡	양호	양호	다소미흡	양호	다소미흡	다소미흡	다소미흡	우수	다소미흡
S C	다소미흡	양호	양호	양호	다소미흡	미흡	다소미흡	다소미흡	다소미흡	다소미흡	다소미흡	미흡	양호	미흡
하 나	우수	우수	최우수	최우수	양호	양호	양호	다소미흡	다소미흡	다소미흡	다소미흡	다소미흡	우수	양호
씨 티	미흡	양호	양호	우수	미흡	-	다소미흡	-	-	-	-	다소미흡	양호	다소미흡
국 민	최우수	최우수	우수	최우수	양호	우수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우수	우수	우수
기 업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농 협	최우수	최우수	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	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수 협	우수	우수	우수	양호	미흡	양호	다소미흡	미흡	미흡	다소미흡	다소미흡	양호	양호	다소미흡
대 구	우수	최우수	-	다소미흡	양호	-	-	-	-	-	최우수	다소미흡	-	우수
부 산	최우수	다소미흡	-	양호	우수	-	-	-	-	-	-	최우수	-	최우수
광 주	-	-	최우수	-	-	-	-	-	-	우수	-	-	-	최우수
제 주	미흡	-	-	-	-	-	-	-	-	-	-	-	최우수	우수
전 북	-	-	-	우수	-	-	-	미흡	최우수	-	-	-	-	최우수
경 남	우수	다소미흡	-	-	최우수	-	-	-	-	-	양호	최우수	-	최우수

※ '-' 지역은 점포가 없어 평가시 제외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8.20.)

평가결과, 시중은행 중에는 농협과 지업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각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수는 농협은행(7개), 기업은행(5개), 신한·국민은행(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특이할 만한 점으로는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인근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시현하였다. 끝으로 저축은행 중에서는 SBI·오케이 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각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수는 SBI저축은행(4개), 오케이·JT친애·페퍼저축은행(1개)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세종의 경우,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8개 시중은행 중 농협만이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기업은행 우수등급,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양호등급, 우리·SC·하나은행 다소 미흡 등급, 수협은 미흡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방은행이 소재하는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지역은 해당지역 지방은행이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아 지역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세종의 경우, 저축은행의 지역채투자 평가결과, SBI·오케이 저축은행은 우수등급을 받은 반면, JT친애·웰컴 저축은행은 미흡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저축은행의 지역채투자 평가결과('21)

구 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종 등급
애큐온	미흡	-	-	-	다소 미흡	-	-	-	-	-	-	우수	-	다소 미흡
SBI	-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다소 미흡	우수	-	최우수	최우수
페퍼	-	-	우수	-	-	-	-	-	미흡	우수	-	-	최우수	우수
한국 투자	-	-	우수	-	-	-	-	-	우수	다소 미흡	-	-	우수	우수
예가람	우수	-	-	-	미흡	-	-	-	-	-	-	미흡	-	미흡
대신	미흡	우수	-	-	다소 미흡	우수	-	-	-	-	미흡	미흡	-	다소 미흡
BNK	다소 미흡	-	-	-	우수	-	-	-	-	-	-	우수	-	우수
JT친애	-	-	우수	미흡	-	-	다소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미흡	-	-	최우수	양호
웰컴	미흡	-	-	미흡	다소 미흡	-	다소 미흡	미흡	-	-	-	다소 미흡	-	미흡
오케이	-	-	우수	최우수	-	-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	우수	최우수
OSB	-	-	우수	-	-	-	-	-	미흡	다소 미흡	-	-	우수	다소 미흡
JT	-	-	다소 미흡	-	-	-	-	-	다소 미흡	미흡	-	-	우수	다소 미흡

※ '-' 지역은 점포가 없어 평가시 제외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8.20.)

다섯째, 정주환경 부문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 주택·기숙사 지원, 이주자금 지원 등의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해당지역 내 정착에 기여하는 법률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섯째, 금융부문에서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운용 시 지역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 재투자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순환에 기여하는 행정규칙에는 ‘은행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끝으로, 공공기관의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에 기여하는 법률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기본법(안)’이 2020년 9월 10일 발의되었으며,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문화·복지·주거·의료 등의 생활기반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민 고용촉진에 기여하는 법률로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020년 9월 2일 발의되었다.²⁸⁾



[그림 4-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책임제

28) 지방소멸위기지역이란 자연적 및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로 지역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지역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법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지칭함

[표 4-4] 소득 역외유출 완화 관련 국가차원의 법제도 현황

부문	법률명	관련내용
생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제45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고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3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확대 제14조 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역인재 채용제도)	제29조의2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3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45조의4 투자기업 대상 고용보조금 지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 사업시행자(임주기업)의 지역민 취업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 지방대학 졸업(예정)자 역내 채용장려
소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6조 지역사랑 상품권기금의 설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농산물 직거래법)	제9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구매촉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 사업시행자(임주기업)의 해당지역 물품구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5 지역 내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제45조의5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기업 우대
투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 및 지 역투자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개정자금 지원기준(행정규칙)	제9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제1조 지역 재투자를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18)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 유도
정주 환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종사자 대상 생활환경 개선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주택 및 기숙사 건설지원 제47조 이주직원 대상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금융	은행업 감독규정(행정규칙_고시)	제78조 은행여신 운용 시 지역간 차별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지역 재투자 평가 실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행정규칙_고시)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 여신운용 시 지역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재투자 평가 실시
기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기본법(안)	제2조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25~35조 교육문화복지주거의료 등 생활기반 지원 제16조 일자리 창출 지원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 타지자체 조례 제정·운용 현황

소득 역외유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차원의 조례제정·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광역·시·도 단위 지방정부는 생산, 고용, 소비, 투자, 정주환경, 금융, 기타 등 총 7개 부문에서 걸쳐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²⁹⁾ 7개 부문별로 각 지자체 조례가 해당 지역의 소득역외유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부문에서 중간재 조달비중을 높여 해당 소재·부품 등의 역외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동 조례의 상위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현재, 해당 조례를 제정·운용 중인 광역지자체로는 경기, 경남, 경북, 세종,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8개 시·도가 이에 해당된다. 관련조항으로는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을 들 수 있다.

둘째, 고용부문에서 지역인재채용을 통해 직주분리 현상을 완화시키는 조례로 경남도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남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조례’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지역 인재채용 촉진을 위한 ‘경남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조례’, 그리고 ‘경남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등을 제정·운용 중이다.

셋째, 소비부문에서 지역의 상품(재화와 서비스)의 소비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는 조례로 경기도의 경우, ‘경기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조례’, ‘경기 농산물 이용촉진 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 조례’ 등을 제정·운용 중이며,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이 중 지역화폐와 공공조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넷째, 투자부문에서는 일부 지자체들은 해당지역 내 본사이전을 촉진시키는 투자유치 조례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국 유일하게 지역 재투자 활성화 조례를

29) 각 조례별로 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별 조항을 고려하여 정리하였음

제정·운용 중인데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 재투자 범위를 통상적인 투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①지역기업제품 구매촉진, ②지역 내 현지생산 부품조달, ③현지법인의 설립, ④지역인재 채용, ⑤지역사랑 상품권 유통 및 활성화 등 소득 역외유출 완화와 관련한 광범위한 시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확대시켜 운용 중이다. 한편, 전북과 강원도의 경우, 각각 본사 이전 시 투자지원과 이전보조금을 지원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다섯째, 정주환경부문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각각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과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 조례를 제정·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된 조례로는 ‘나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충북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섯째, 금융부문에서는 지역 기반의 금융기관을 유치·설립하여 지역 내 자금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운용 사례로 ‘부산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전북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북 금고지정 및 운용조례’ 등을 들 수 있다. 관련하여 전북도는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시 지역 재투자 실적을 평가반영하고 있다.

끝으로, 경기도의 경우, 도내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국 유일하게 사회적 가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운용 중이며, 유통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례를 통해 ①지역주민 고용촉진, ②지역업체 입점 및 납품확대, ③지역 금융기관 이용촉진, ④지역 금융기관 이용촉진, ⑤공사용역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의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 소득 역외유출 완화 관련 지자체 조례제정 사례

부 문	조례명	관련내용
생 산	전북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조례	제6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 제7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경북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 제7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고 용	경남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조례	제4조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추진
	경남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조례	제1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촉진
	경남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제1조 도내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경기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7조의2 소비지원금지원(지역화폐로 지급)
소 비	경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 도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제6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경기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조례	제2조 공공조달을 통한 지역경제 공헌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1조 소상공인 소득향상 및 골목상권 활성화
	강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3조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투 자	부산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조례	제2조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지역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현지법인의 설립 ·지역 내 현지 생산부품의 조달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고용률 제고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및 활성화 ·지역 재투자자금 출연 및 후원
	전북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7조 본사 이전 시 투자지원(80억 한도) 제12조2 대기업 본사 이전 시 투자지원(300억 한도)
	강원 투자유치 지원조례	제12조 본사 이전보조금 지원
정 주 환 경	나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4조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임직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
	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산업단지 경쟁력(정주여건 포함)지원
금 융	부산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14조 입자·고용·교육·훈련·인력·세제 지원
	전북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금융기관 투자유치, 정주여건, 신설지원
	전북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4조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 재투자
기 타	경기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2조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경기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례	제4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지역주민 고용촉진 ·지역업체 입점 및 납품 확대 ·지역 금융기관 이용촉진 ·공사·용역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3) 충남도 조례 제정·운용 현황

소득 역외유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충남도 차원의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로는 생산, 고용, 소비, 투자, 정주환경, 금융, 기타 등 총 7개 부문에서 11개 조례 및 1개 규칙을 제정·운용 중이다.

첫째, 충남도는 생산부문에서 소재·부품의 역내조달 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충남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하여 제정·운용 중이다. 다만, 타지자체와 달리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둘째, 고용부문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도민 고용촉진과 지역인재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충남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 중이다.

셋째, 소비부문에서는 지역의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소비와 공공조달 등을 목적으로 각각 ‘충남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충남 지역화폐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남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등을 제정·운용 중이다. 이 중 지역화폐와 공공조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 상위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넷째, 투자부문에서는 국내기업 이전지원과 이주직원 대상 보조금 지원을 위해 ‘충남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 중이며, 동 조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다섯째, 정주환경 부문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직원 대상 정주여건(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조성을 위해 ‘충남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지원 조례’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및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충남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운용 중이다. 관련하여 전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제18조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에 따라 제정되었다.

여섯째, 금융부문에서는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두고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①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제고, ②지역사회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은 부재한 실정으로 지역 내 투자촉진 등에 한계를 노정 중이며, 금고지정 시 지역자금의 역내 순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끝으로, 충남도는 유통업체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협력을 위해 ①지역민 고용촉진, ②지역 물품우선구매 및 판매, ③용역과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 조항을 두고 있는 ‘충남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 중이다. 다만, 충남의 경우, 일부 타지자체와는 다르게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에서 소득역외유출 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원조항이 있으나 충남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균형발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만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성장 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 대상으로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아래의 각주에 기술되어 있는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내 생활 기반 확충과 관련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³⁰⁾

30) 구체적 사항에는 ①도서개발에 관한 사항, ②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사항, ③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④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⑤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⑥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⑦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⑧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⑨산촌개발에 관한 사항, ⑩지방 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⑪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됨

[표 4-6] 소득 역외유출 완화 관련 충남도 자치법규(조례·규칙) 현황

부 문	조례명	관련내용
생 산	충남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육성
고 용	충남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제3조 도민의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추진
	충남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지원
소 비	충남 지역화폐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제5조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지원
	충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충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조례	제6조 지역 기업제품 공공기관 구매
	충남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조례	제2조·8조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공공조달
투 자	충남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 국내기업 이전지원(입지, 설비투자) 제6조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
정 주 환 경	충남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 상생산업단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충남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지원 조례	제3조 이전 공공기관 지원대상 정주여건(교육, 문화, 의료, 체육 등)조성 지원
금 용	충남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5조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및 지역사회 기여
기 타	충남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지역민 고용촉진 ·지역물품 우선구매 및 판매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 소득 역외유출 추진사례

1) 타지자체

지방정부 차원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추진사례를 시책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법인화 추진사례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핵심인력의 지역고용 및 지역업체의 납품비중을 높이고 아울러 지역은행 이용률과 지역자금의 유동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형유통기업(신세계, 롯데 백화점·마트·아울렛)본사 및 지점의 현지법인화를 추진 하였고 이를 위해 지역 기여도 조사(지역고용, 지역물품입점, 지역금융 활용 수준 등 9개 항목)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이케아 부산 현지법인화를 추진하여 2017년 지역 유통 대기업 현지법인 제1호로 동부산점 부산운영법인을 설립하였고 부산은행 주거래 은행 이용, 지역인재 465명 채용, 지역업체 기회제공,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1995년 신세계 백화점의 현지법인화를 이루었고 이후 광주 이마트를 포함하는 (주)광주신세계라는 지역명이 붙은 현지법인 설립을 성공함에 따라 ①지역특산물 판로확보, ②지역봉사활동, ③장학회 설립, ④광주 신세계 이마트점에 투자하는 등 지역 재투자를 이끌어 냈다.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신세계 백화점의 현지법인화를 추진하여 2012년 현지법인 설립에 성공한 바 있으며, 대전에서도 동 백화점의 현지법인화를 추진하여 ①지역건설, ②지역민 고용, ③소상공인 상생, ④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약체결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에는 신세계 백화점 건설계획(13)이 현재 오피스텔 건설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현지법인화에 대한 실익이 없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의 경우, LF스퀘어 광양점의 현지법인화를 촉구하기 위해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으로써 매출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에는 2015년 롯데 면세점 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①수익일부를 지역사회로 환원, ②중소중견기업 전용공간 운영, ③소상공인 중심의 쇼핑인프라 및 상생협력 추진 등을 이끌어낸 바 있다.³¹⁾

31) 현지법인은 지점과 달리 독립적 의사결정권과 권한이 지역에 있어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업체 납품과 판로 확대, 지역인재 채용, 협력업체 육성 등 대형 유통점 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둘째, 경기도에서는 현재, 자체 공정조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공공부문에서의 지역 제품 구매확대를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중이며, 그 일환으로 올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부산에서는 시,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재투자 조례를 제정하고 재투자 기금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역재투자 지표와 평가를 통해 ①공공기관 등의 지역기업제품 구매 촉진, ②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③기업의 지역재투자, ④그 밖의 지역재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넷째, 전북도에서는 금고지정 시 자체적으로 지역 재투자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 연고인 전북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지방은행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 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받는 금융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돕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을 감안하면 충남의 경우, 금고지정 시 지역 재투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연고의 은행 역시 설립되어 있지 않아 지역 재투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관련하여 강원도는 2012년 강원은행을 설립하고자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과 연계하고 지방거래의무할당제 도입 및 강원은행 설립추진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한편, 전북도는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현대 자산운용과 무궁화신탁 본사이전 확정을 계기로 지역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다섯째,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를 제외한 우리 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는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두 가지 종류로 발행되는데 일반발행의 경우, 모든 도민은 기본 6%의 할인을 받아 구입가능하며 연말 소득공제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민 각자 취향에 맞게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지법인은 인사, 기획, 행정, 고객서비스, 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어 지역인재가 관리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점은 매출을 당일 본점으로 송금해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며 본점 주거래 은행과 거래해 지역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현지법인은 지역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활용, 이를 통해 매출액과 급여 등을 지역은행에 예치한다. 실제 ㈜광주신세계는 광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정책발행의 경우,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출산가정에게 지급되는 산후조리비를 정책발행카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발행 카드와 마찬가지로 충전 사용이 가능하다.

끝으로, 울산시의 경우,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국내 대기업 생산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반면, 본사는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있어 단순 생산기지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富)의 역외유출 논란이 여전한 실정이다. 관련하여 최근 울산시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울산투자 울산본사’ 노사민정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표 4-7]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타지자체 추진사례

지역	관련시책명	주요내용
부산	· 대형 유통업체 현지법인화 법제화 추진	· 국내 대형 유통기업(신세계, 롯데 백화점·마트·아울렛)본사와 지점의 현지법인화 추진 · 지역 기여도 조사(지역고용, 지역물품입점, 지역 금융 활용 수준 등 9개 항목)
	· 이케아 부산 현지법인화 추진	· '17년 지역 유통 대기업 현지법인 설립 제1호 (동부산점 부산운영법인 설립, 부산은행 주거대출 은행이용, 분산 지역인재 465명 채용, 지역업체 기회제공, 지역 중소기업인과 상생협력 이행 등)
대구	·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신세계 백화점 현지법인화 추진	· 2012년 현지법인 설립
광주	· (주)광주신세계(신세계 백화점 및 광주 이마트)현지법인화 추진	· 1995년 현지법인 설립(지역특산물 판로확보, 지역봉사활동, 장학회 설립, 광주 신세계 이마트점 투자하는 등 지역 재투자)
전남	· LF스퀘어 광양점 현지법인화 촉구	·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의결(매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고용창출, 세수 증대 등)
제주	· 제주 롯데면세점 현지법인화 추진	· 2015년 현지법인화 이행(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중소기업 전용공간 운영, 소상공인 중심의 쇼핑인프라 및 상생협력 추진)
김해	· 관광유통단지 정상추진 및 현지법인화 독과점방지 제도 추진	· 대기업 사업의 현지법인화를 위해 경남도, 국회, 정부에 관련법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
울산	· 신세계 울산혁신도시개발 현지법인화 촉구	· 지역은행 금융거래사 선정, 지역협력업체 참여 기회 제공,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약체결
대전	· 신세계 백화점 현지법인화 추진	· 협약체결(지역건설, 지역민 고용, 소상공인 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경기	· 자체 공정조달제도 도입 추진	·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 추진('21) · 지역 공공부문에서의 지역제품 구매 확대로 지역 순환경제 구축
부산	· 지역 재투자 추진	· 지역 재투자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21) · 금고지정 시 지역 재투자 실적 평가반영 · 부산지역 금융기관과 역외 기업의 수익일부 지역 재투자 → 지역경제 선순화 구조 정착
전북	· 지방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 2년 연속 지방은행 분야 최우수 등급(지역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지원, 서민대출지원, 금융 인프라 조성, 지역금융지원전략)

(계 속)

지역	관련 시책명	주요내용
강원	· 강원은행 설립추진	·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과 연계추진('12) 강원은행 설립추진 위원회 발족, 지방거래 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등
전북	· 금융본사 이전 추진	· 현대자산운용과 무궁화신탁 본사이전 확정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울산	· 대기업 본사 이전 추진	·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지역 기업의 본사이전 추진_현대차, SK이노베이션, 삼성SDI)
경기	· 경기 지역화폐 추진	· 경기도 내 31개 시·군발행(일반발행, 정책발행)
경기 외	·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추진	· 경기(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전북(탄소소재), 경남(정밀기계)
세종 외	· 지역 인재채용 추진	· 전국 13개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2019년 21%→2020년 24%→2021년 27%→2022년 30%)

2) 충남도

① 지역 인재채용

충남도와 22개 도 출연·출자기관은 도내 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강화를 통한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아래 다음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표 4-8] 지역 인재채용 목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서

구분	주요내용
제1조(목적)	신규 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또는 고등학교 출신자로 채용
제2조(정의)	지역인재는 도내 소재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를 지칭
제3조(내용)	충남도와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최대 40%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
제4조(협약기간)	협약의 유효기간 10년, 협약 연장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협의하여 정함
제5조(기타사항)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발생, 비규정 사항은 상호협의 및 관계법령·관습에 따르며, 상호협의하에 협약 변경 가능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

② 상생산업단지 조성

충남도는 2012년부터 직주분리(職住分離)현상을 완화시켜 피용자 보수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기존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주거, 문화, 의료, 복지, 환경 등 복합적 정주여건을 갖춘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근로자를 직장과 근접한 지역에 거주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³²⁾ 2021년 현재, 예산이 수반된 산업단지 정주

32)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상생산업단지의 정의는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여건 개선사업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도내 6개 시군(천안·보령·아산·논산·서천·홍성)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에 총 7개 사업이 진행되는 바, 구체적으로 백석농공단지 내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관창산단 내 공동기숙사 설치, 인주산단 내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 아산테크노산단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종천농공단지 내 근로자 생활복지관 건립, 홍성산단 내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7개 사업의 총 예산은 6,029백만원이며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50%씩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4-9]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현황(21)

시군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계	6개시·군, 7개 사업		6,029.308	3,014.654	3,014.654
천안	①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 총사업비 40억원('20-2, '21-20, '22-18)	지상 3층	2,000	1,000	1,000
보령	② 관창산단 공동기숙사 설치 * 총사업비 40억원('19-10, '20-12, '21-18)	지상 3층	1,800	900	900
아산	③ 인주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 개원 후 4년(3년차)	1식	60	30	30
	④ 아산테크노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 개원 후 4년(3년차)	1식	60	30	30
논산	⑤ 논산산단 공동어린이집 지원 * 개원 후 4년(3년차)	1식	60	30	30
서천	⑥ 종천농공 근로자 생활복지관 건립 * 총사업비 16.5억원('21-8, '22-8.5)	지상 2층	800	400	400
홍성	⑦ 홍성산단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 총사업비 35억원('19-10, '20-12.5, '21-12.5)	지상 2층	1,249.308	624.654	624.654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

문화가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명칭함

③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강원도와 충청권은 지방은행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최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관련 4개 시·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결과, 거주자 과반 이상이 지방은행 설립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남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일정부분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및 투자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표 4-10] 충청권 은행설립 주요 추진상황

구분	주요내용
'21.3월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21.6월	지금금융활성화 방안마련 전문가 집중 토론회 개최
'21.6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관련 4개 시도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21.6월	충청권 3개 지자체(대전, 세종, 충북) 실무협의 및 의견교류
'21.7월	지역금융기관 설립 추진 전담TF팀 구성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

충남도는 향후 지방은행 설립건을 충청권 행정협의회 의제로 상정하고, 대선 지역 공약 및 지방선거 핵심공약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에는 범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단 발족 및 자본금 출자자를 모집하고,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 인가관련 사전협의 및 인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④ 지역화폐 발행유통

현재,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총 발행액은 6,952억원이며, 4월 말 기준으로 98,189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시군별로는 발행액 기준으로 천안시가 1,742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천 812억원, 아산 765억원, 서산 66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1] 충남 지역화폐 발행유통 현황(2021.6월)

(단위 : 억원, 개소)

구 분	2021년 발행 계획 (정책발행포함)	발행유통현황(정책발행포함)			가맹점현황		비 고
		발행액	판매액	환전액	20.12.31.	21.4.30.	
계	10,000	6,952	5,705	5,531	90,656	98,189	
천안	2,000	1,742	1,742	1,579	53,777	57,470	카드
공주	700	592	591	552	3,299	3,802	모바일, 카드
보령	1,000	500	260	291	2,420	2,739	지류,모바일,카드
아산	2,000	765	692	582	6,688	7,357	지류,모바일,카드
서산	1,000	660	527	615	4,637	4,811	지류,모바일,카드
논산	310	293	213	110	3,463	3,671	지류,모바일,카드
계룡	70	78	70	52	964	1,037	지류,모바일
당진	180	206	207	172	3,040	3,316	지류,모바일
금산	300	251	64	99	1,967	2,080	지류,모바일,카드
부여	900	448	399	399	2,441	2,582	모바일, 카드
서천	700	812	392	426	1,948	2,073	지류,모바일,카드
청양	120	70	70	75	854	984	지류,모바일
홍성	240	197	202	224	2,209	2,483	지류,모바일,카드
예산	230	148	164	184	1,751	2,016	지류,카드
태안	250	190	112	171	1,198	1,768	지류,모바일,카드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

3.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소득 역외유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차원의 법·제도 및 지방 정부차원의 조례(규칙포함)제정과 운용실태, 그리고 관련한 지자체의 추진시책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 및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광역시도) 모두 소득 역외유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를 제정·운용 중이며, 정책영역별로는 크게 생산, 고용, 소비, 투자, 정주환경, 금융, 기타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분되어진다. 둘째, 당초 제정취지가 소득 역외유출 완화 또는 지역경제 순환구조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지역 재투자법(발의 중) 및 부산시 지역재투자 조례가 거의 유일하며, 대부분은 개별 조항이 소득 역외유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셋째,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국가단위의 상위법을 근거로 제정·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근거법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제정된 조례는 공공조달, 지역화폐, 유통분야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넷째, 소득 역외유출 완화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제는 시장영역보다는 공공의 영역에서 작동되며, 이로 인해 시장메커니즘이 아닌 정부의 개입에 의해 작동되어진다. 다만, 최근 들어 기업의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속에서 관련법안 마련이 적극 추진되는 경향이다. 다섯째, 충남도의 경우, 타지자체와 비교해보면 관련조례 제정 및 운용수준이 대동 소이하나, 소득 역외유출 문제가 지역경제 최대 현안임을 감안하면 타지자체 몇몇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업의 현지법인화, 기업과 은행의 지역 재투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타지자체와 유사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는 경우, 타지자체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조항을 검토하여 우리도 조례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상생산단 조성을 추진해 온 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와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연계·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타 지자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대형유통기업과 기존 해당지역 내 대기업을 현지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과 지방의회(도의원, 시군의원 등), 지역사회(시민단체, 언론 등)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지역 재투자기금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법(안) 등이

발의 증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가보다 선행하여 관련조례를 제정·운영중인 것을 감안하면 충남도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타지자체 추진사례에서 적극 벤치마킹할 만한 것은 지역 재투자 조례제정은 물론이고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금융기관 설립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주요한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³³⁾

〈표 5-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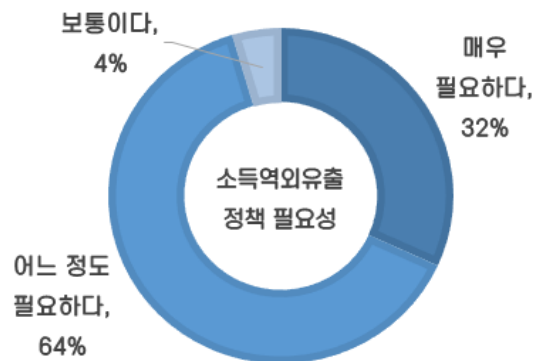
구 분	주요내용
조사목적	·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도출
조사대상	· 전문가 그룹(대학, 연구원,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22명)
조사기간	· 2021년 10월 5일 ~ 10월 14일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기반의 온라인 설문(mail surveys) 및 대면설문(interview surveys)
조사내용	· 지역차원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 노력 인지수준 파악
	· 소득 역외유출 유형별 대책마련 시급성 정도 - 영업잉여 유출, 파용자 보수 유출, 지역자금 유출, 소비유출, 중간재 역외조달에 따른 자금유출 등
	·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문 파악 -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정주환경, 기타
	· 소득역외유출지역 지원관련 상위법 반영 필요성 파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소멸위aggi지역 지원특별법(안)에 반영 수준
	·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개선방향 우선순위 파악 - 영업잉여 유출방지,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 지역내 소비확대, 지역민 고용확대, 지역내 자금순환, 직주분리 현상 완화, 지역인재육성 및 채용, 역내 산업 생태계 구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 법·제도적 개선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도 파악 - 기업 현지법인화 국가재정지원확대, 지역 재투자법 제정, 지역화폐 및 지역 상품권 활성화, 지역주민 고용지원금 확대, 지역 금융기관 설립, 이전기업 정주 여건 조성지원,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소득역외유출 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 상위법 반영, 사회적 가치 실현 책임제 도입

33) 전문가 그룹은 기존 충남도의 소득 역외유출 자문위원과 국책 연구기관(산업 연구원 등)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선정됨

2. 주요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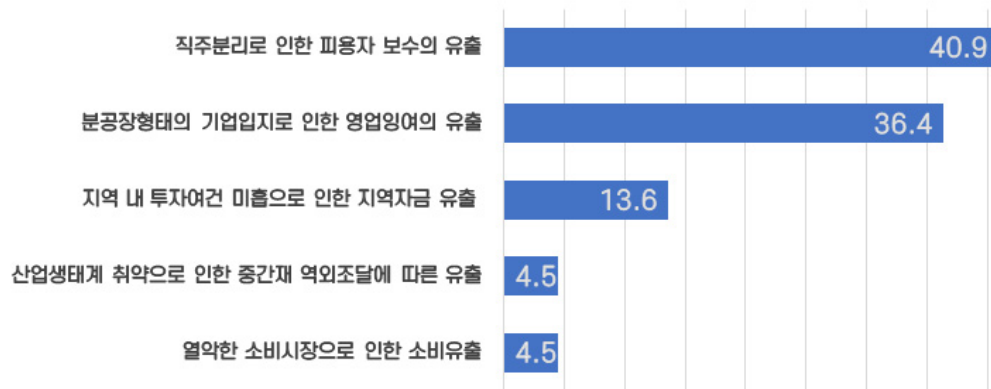
1) 일반사항

지역차원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노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6.0%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32.0%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응답비중은 64.0%로 나타난 반면, '필요 없다' 또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한명도 없어 지역차원의 소득역외 유출 완화노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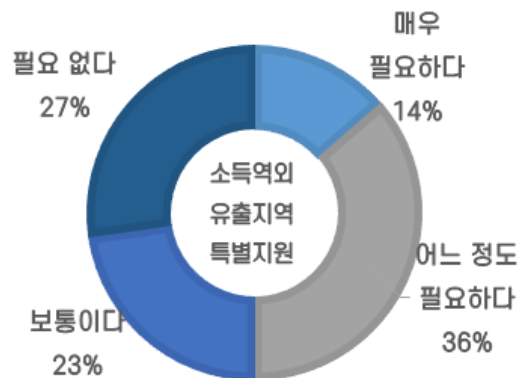
[그림 5-1] 소득 역외유출 완화노력

다음으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소득유출 형태로는 '직주분리로 인한 피용자 보수(근로소득)의 타지역 유출'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공장형태의 기업입지로 인한 영업잉여 유출' 36.4%, '지역내 투자여건 미흡으로 인한 지역자금 유출' 13.6%, '산업생태계 취약으로 인한 중간재 역외조달에 따른 유출' 및 '열악한 소비시장으로 인한 소비유출' 비중이 각각 4.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5-2] 소득 역외유출 유형별 정책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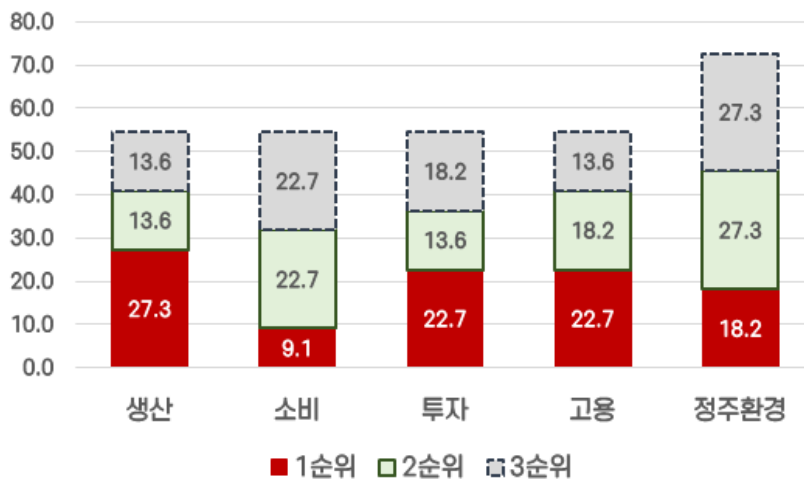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안)상 지원대상 지역으로 소득역외 유출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0.0%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구체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비중이 14.0%,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비중은 36.0%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 없다’라는 응답비중은 27.0%로 나타났다.



[그림 5-3] 관련법령에 소득 역외유출지역 포함 필요성

2) 개선방향

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문별 1순위로는 생산부문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투자와 고용부문 각각 22.7%, 정주환경부문 18.2%, 소비부문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2순위 중에서는 정주환경부문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비부문 22.7%, 고용부문 18.2%, 생산 및 투자부문 각각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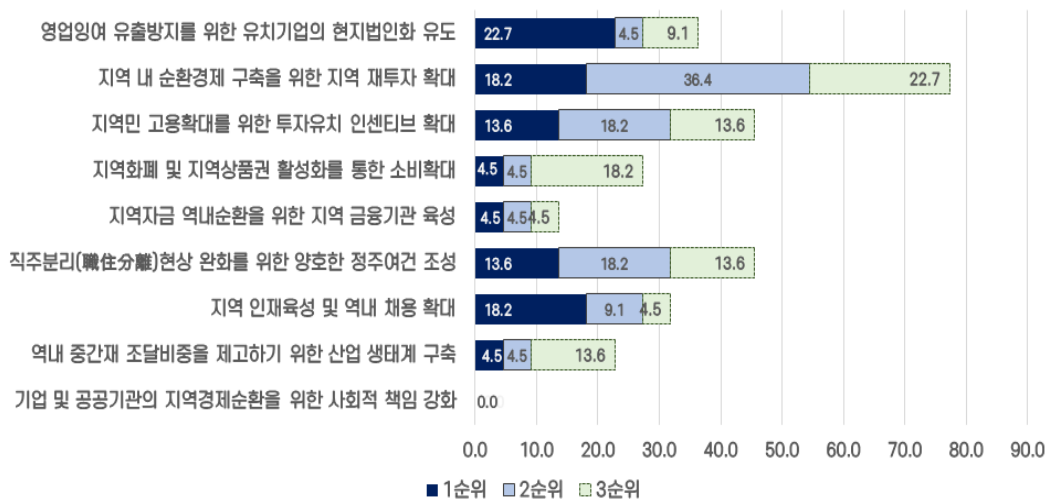


[그림 5-4] 소득 역외유출 개선부문 우선순위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법·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응답결과, 1순위 중에서는 ‘영업잉여 유출방지를 위한 유치기업의 현지법 인화 유도’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 재투자 확대’ 및 ‘지역인재 육성 및 역내 채용 확대’가 각각 18.2%, ‘지역민 고용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및 ‘직주분리 현상 완화를 위한 양호한 정주여건 조성’이 각각 13.6%, 그리고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확대’, ‘지역 자금 역내 순환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 육성’, ‘역내 중간재 조달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각각 4.5% 등의 순이며,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사회적 책임강화’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2순위 중에서는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 재투자 확대’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민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직주분리 현상 완화를 위한 양호한 정주여건 조성’이 각각 18.2%, ‘지역 인재육성 및 역내 채용확대’ 9.1%,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확대’, ‘지역자금 역내순환을 위한 지역금융기관 육성’, ‘역내 중간재 조달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각각 4.5% 등의 순이며,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사회적 책임강화’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우선 개선해야 할 것은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 재투자 확대’, ‘지역민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직주분리 현상 완화를 위한 양호한 정주여건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법·제도적 개선방향 우선순위

3) 법·제도적 개선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지역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9개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응답결과,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각각 3.35점, 3.23점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기준으로는 '이전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지원 확대'가 4.09점으로 전체 1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다음으로 '지역 재투자법 제정(3.73)', '지역주민 고용지원금 확대(3.68)',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또는 할당제 도입(3.36)', '소득역외유출 지역의 유치기업 현지법인화에 대한 국가재정자금지원 확대(3.32)', '생산과 소비의 연계 및 지역화폐(지역상품권) 확대(3.32)', '역내 투자 등 자금순환 확대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 설립(3.23)',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책임제 도입(2.9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상 지원대상에 소득역외유출 지자체 포함(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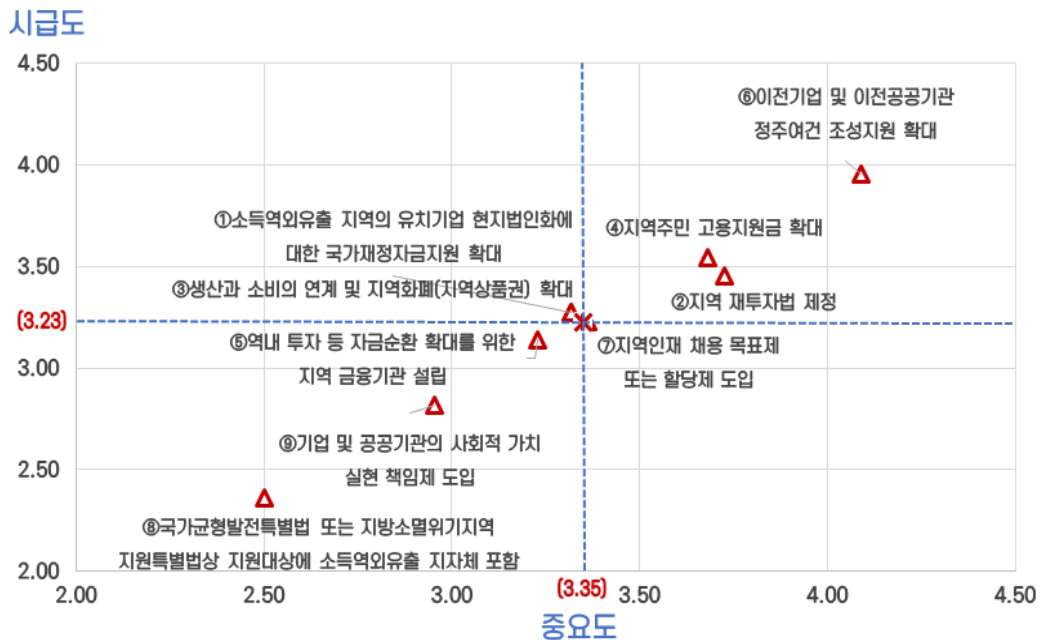
[표 5-2] 법·제도적 개선과제 중요도 및 시급도 순위

구분	법제도적 개선과제	중요도	시급도
1	소득역외유출 지역의 유치기업 현지법인화에 대한 국가재정자금지원 확대	3.32(5)	3.27(4)
2	지역 재투자법 제정	3.73(2)	3.45(3)
3	생산과 소비의 연계 및 지역화폐(지역상품권) 확대	3.32(5)	3.27(4)
4	지역주민 고용지원금 확대	3.68(3)	3.55(2)
5	역내 투자 등 자금순환 확대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 설립	3.23(7)	3.14(7)
6	이전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지원 확대	4.09(1)	3.95(1)
7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또는 할당제 도입	3.36(4)	3.23(6)
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안)상 지원대상 지역으로 소득역외유출 지자체 포함	2.50(9)	2.36(9)
9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책임제 도입	2.95(8)	2.82(8)
전체평균		3.35	3.23

주 : ()는 순위임.

반면, 시급도 기준으로 ‘이전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지원 확대’가 3.95점으로 전체 1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지역주민 고용지원금 확대(3.55)’, ‘지역 재투자법 제정(3.45)’, ‘소득역외유출 지역의 유치기업 현지법인화에 대한 국가재정자금지원 확대(3.27)’, ‘생산과 소비의 연계 및 지역화폐(지역상품권) 확대(3.27)’,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또는 할당제 도입(3.23)’, ‘역내 투자 등 자금순환 확대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 설립(3.14)’,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책임제 도입(2.8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상 지원대상에 소득역외유출 지자체 포함(2.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래의 그림에서 시급도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즉, 1/4분면에 위치한 개선과제는 ‘이전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지원 확대’, ‘지역주민 고용지원금 확대’, ‘지역재투자법 제정’이며, 상대적으로 시급도와 중요도가 낮은 3/4분면에 위치한 과제로는 ‘역내 투자 등 자금순환을 위한 지역금융기관 설립’,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책임제 도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안)상 지원대상에 소득역외유출 지자체 포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5-6] 소득 역외유출 개선과제의 시급도 및 중요도

3. 전문가 정성적 의견종합

전문가 A

- ▶ 지역유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소멸을 막고, 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전, 공공기관 이전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메가시티 형성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B

- ▶ 도내 시군 혹은 권역 간 그리고 산업 간 소득역외유출의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역과 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이나 시책이 필요함. 기업입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이 있는 북부권 내 분공장들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나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나 타 권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나 정책이 해당 권역 내 기업의 입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즉, 북부권에는 규제 중심의 negative 시책(이를테면, 현지법인화 혹은 지역 재투자의 의무화)이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시책의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원책 중심의 positive 시책(이를테면,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요구됨

전문가 C

- ▶ 충남의 소득역외유출 문제는 공간적으로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 아산 등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든 정책대안을 충남 전체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핀셋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소득의 역외유출이 있더라도 지역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 전체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이 지역경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유치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방향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전문가 D

- ▶ 광역지자체별로 소득역외유출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통일되게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지원특별법을 따로 제정하여 소득역외유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충남의 경우, 현지법인화 뿐만 아니라 고용 정착화가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만, 전복은 중간재 조달을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융통성을 부여해야 할 것임. 또한 지역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유치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GRDP 고성장을 위해서는 법인의 소득역외유출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현지법인화를 요구하게 될 경우, 투자 유치에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성장 단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 정제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 속)

전문가 E

- ▶ 충남의 소득유출은 그 지역의 생산력이 매우 높는데 주로 기인하며(1인당 GRDP 전국 2위), 유출이 발생한 이후에도 1인당 지역총소득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인구를 감안할 때 여전히 총소득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산 및 투자에 변화를 가하여 소득의 흐름을 막는 것이 오히려 그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다만 개인부문의 처분가능소득이 총생산이나 총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생활여건의 개선과 같이 자연스럽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무조건 소득 유출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인근 지역과의 유출입의 균형점이 어느 지점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전문가 F

- ▶ 역외 유출 완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역내에 기업과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임. 특히 역내에서 창업된 기업이 성장하면서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음. 충남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며, 정책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은행과 같이 지역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임. 지방은행은 그 자체가 좋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고, 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무엇보다 지방은행의 설립 발전은 충남 도민이 뜻만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임.

4.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법령 및 지자체 조례·규칙, 그리고 타지자체와 충남도의 역외유출 완화시책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7개 부문(생산·고용·소비·투자·정주·금융·기타)별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를 중앙정부 및 충남도 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부문에서의 개선방향은 역내 중간재 조달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충남차원에서는 주력산업의 소재·부품 전문화 및 특화단지 조성을 확대해야 하며, 관련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잉여 유출방지를 위한 유치기업의 현지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국가재정자금지원 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해야하며 관련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 사안에 대해 충남도차원에서는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의 현지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충남유통산업발전지원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관련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부문에서의 개선방향은 지역 인재육성 및 역내채용을 확대하고 지역민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 차원에서는 각각 이전 공공기관 대상 지역인재채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과 투자유치 촉진조례상 지역민 고용지원금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부문에서는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확대를 위해 충남도차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하되, 이에 앞서 관련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경제순환을 위한 공공조달 차원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서는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관련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자부문에서는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 재투자 확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는 지역 재투자 기금법과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를 통합·운용할 수 있는 ‘지역 재투자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해야하며, 충남도 차원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지역재투자조례(가칭)’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주환경 부문에서는 직주분리현상 완화를 위한 양호한 정주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충남도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와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연계·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임직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주택자금 대출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위한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금융부문에서는 지역자금 역내순환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충남도 차원에서는 ‘충남금융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충청권 은행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 평가를 위해서는 충남도 차원에서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보완하여 지역 재투자 실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기타부문으로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對정부 건의사항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안)상 지원대상에 소득 역외유출 지자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충남도 차원에서는 충남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지원대상으로 소득역외유출 시군을 포함시킬 것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한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충남도 모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관련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7개 부문의 개선과제를 개별조항으로 하는 별도의 법령제정을 소득역외유출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가에 건의하거나 또는 지방정부차원의 ‘충남 소득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지원조례(가칭)’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3]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종합

부문	개선방향	주체별 개선과제
생산	역내 중간재 조달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	(충남) 주력산업의 소재부품 전문화 및 특화단지 조성 확대 및 관련조항 명문화
	영업입여 유출방지를 위한 유치기업의 현지법인화 유도	(국가) 수도권 소재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국가재정자금지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및 관련조항 명문화 (충남)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의 현지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 조례제정 또는 기존 조례(충남유통산업발전지원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관련조항 명문화
고용	지역 인재육성 및 역내 채용 확대	(충남) 이전 공공기관 대상 지역인재채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지역민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충남) 투자유치 촉진조례상 지역민 고용지원금 조항 명문화
소비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확대	(충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및 관련조례 제정
	공공기관의 지역경제순환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충남)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및 관련조항 명문화
투자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 재투자 확대	(국가) 지역 재투자법 조속 제정(지역 재투자 기금법 및 평가제도 통합·운용) (충남) 충남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정주	직주분리(職住分離)현상 완화를 위한 양호한 정주여건 조성	(충남) 도시계획조례와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조례 연계운용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충남) 임직원자녀대상 주택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조항 명문화
금융	지역자금 역내순환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 육성	(충남) 충남 금융산업 육성조례 제정 충청권 은행설립 추진
	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 평가 추진	(충남) 금고지정 평가기준 보완(지역 재투자 실적 반영)
기타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근거 마련	(국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안)상 지원대상에 소득 역외유출 지자체 포함 (충남) 충남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지원대상으로 소득 역외유출 시군 포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제 추진	(국가·충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관련 법제화(법령 및 조례 제정)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최근 10여 년간 충남 지역경제가 당면한 핵심이슈 중 하나는 소득의 역외유출 수준을 줄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농업부문의 생산과 소비연계, 근로자의 직주일치를 위한 상생산업 조성 등 나름의 다양한 시책들을 모색하여 추진해 왔다. 다만, 이러한 도정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으로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 및 비중은 전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몇몇 특정 시책만으로 소득 역외유출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시책발굴이 아닌 소득 역외유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앞서 소득 역외유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의 소득역외유출규모는 전국 최대이며, 최근까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둘째, 역외로 유출되는 소득을 계정별로 구분해보면 요소소득 중 피용자보수 유출비중은 2000년 56.9%에서 2019년 69.2%로 증가했고 영업잉여 유출비중은 동 기간 중 43.1%에서 30.8%로 감소해 피용자보수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셋째,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의 역외유출(순유출) 비중은 2008년 -1.25%에서 2019년 -2.41%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그 유출경로를 살펴보면 2019년 현재, 경기 26.7%, 세종 23.4%, 대전 23.2%, 충북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자금의 유출은 2020년 현재, 19조 7천억원(GRDP의 17.5%수준)으로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역외 소비비중은 2019년 57.1% 수준으로 시도 중 세종, 인천, 경북, 경남에 이어 5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 역외유출 완화 즉, 지역경제 순환에 직·간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조례, 규칙 포함)를 운용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법제의 제정취지는 모두 상이하며, 각각의 정책영역에서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순환에 기여하는 개별조항을 가지고 있을 뿐 소득 역외유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는 관련법제의 개별조항은 정책영역별로는 크게 생산, 고용, 소비, 투자, 정주환경, 금융,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셋째,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제정·운용되나, 지역 화폐 및 지역 재투자 활성화 등과 관련한 일부 조례는 지방정부차원에서만 제정·운용되고 있다.

아울러, 정책영역별 관련법제의 개별조항 검토 외에도 지방정부 단위의 역외유출 완화시책 및 추진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로는 첫째, 주력산업의 소재·부품 전문화 및 특화단지 조성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확대하는 관련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인재육성 및 역내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 대상 지역인재채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과 지역민 고용지원금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조달 부문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서는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관련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재투자 확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는 지역 재투자 기금법과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를 통합·운용할 수 있는 ‘지역 재투자법(가칭)’을 제정해야하며, 충남도 차원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지역재투자조례(가칭)’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주분리현상 완화를 위한 양호한 정주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조례와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연계·운용해야하며,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임직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주택자금 대출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위한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자금 역내순환을 위해 ‘충남금융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충청권 은행설립을 추진해야하며, 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 평가를 위해서는 지역 재투자 실적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안)상 지원대상에 소득 역외유출 지자체를 포함시키는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는 ‘이전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지원 확대’, ‘지역주민 고용지원금 확대’,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접근방법에 있어 소득 역외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의 개별조항에 국한하여 검토하는 수준의 평면적 분석에 그쳐 향후 관련 법·제도의 구조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또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 그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단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향후 정책 델파이(Delphi)와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한 전문가 집단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델파이 분석을 통해 전문가가 최대한 직관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여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세부과제를 선정한 후 이에 병행한 AHP 분석을 통해 시급성과 중요도 등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문헌

- 국토연구원, “마을 만들기-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2011.
- 권정택,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운동의 태동에 관한 고찰-일본의 내발적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관광경영학회 제14집.
- 김시백,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핑, 전북발전연구원, 2019.
- 김용웅 외,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03.
- 김정현·전성범, “광주전남지역 금융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지역본부자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15.
- 김태연, “신내생적 농촌발전의 개념적 특성과 활용가능성 모색-세계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농촌개발모델의 모색”, 제원연구재단, 2009.
- 김홍배,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2005.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역경제론”, 보성각, 2006.
- 박 경, “우리나라 지역간 소득의 역외유출현상(충남을 중심으로)”, 계간 공간과 사회, 제21권 4호, 통권38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 박 경, “지역개발 전략으로서 내발적 발전론- 일본의 연구동향과 과제”, 공간과 사회 통권 11호, 한울, 한국공간환경학회, 1999.
- 박진도 외, “군 지역의 내생적 발전의 에너지 발굴 및 전략의 연구”, 지역을 생각하는 모임, 1999.
- 박진도,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2011.
- 박진도, “한국농촌사회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내발적 발전전략과 농촌사회의 통합적 발전”, 농촌사회 제20집 1호, 2010.
- 손성태(역), “경제순환과 도시의 경제진흥”.
- 손승호, “일본 지방도시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내발적 발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1권 3호, 2008.
- 신동호,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연구”, 전략연구, 충남연구원, 2012.
- 여형범·이관률·허남혁, “내발적 발전관점에서 본 충남 지역발전의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12.
- 윤상호, “소득의 역외유출이 문제가 아닌 이유”, 이슈 페이퍼 제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 윤철석·이성근, “내발적 접근을 통한 지역산업의 특성화와 전문화”, 영남지역발전연구 제25집.

이강익, “부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불균등 발전, 지역사회학 13, 2011.

이은규 외, “지역산업지원을 위한 울산지역 금융기능 강화방안”, 지역본부자료, 한국은행 울산본부, 2011.

이인로, “충남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및 거주자의 역외소비”, 경제공동체 분야 컨설팅 회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21.

일본 경제산업성, “순환형 지역경제의 재구축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2004.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백서”, 2004.

임경수, “내발적 발전의 본질과 모형, 추진방향”, 지방행정, 2006.

전성범,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본 광주전남지역 소비 유출입 현황과 시사점”, 광주전남 경제이슈,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14.

정재준,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비교를 통한 소득의 역외유출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1권 제4호, 2018.

정준호, “지역과 선순환 경제”, 지역경제순환연구회 제1차 워크숍 자료, 2012.

통계청, 지역계정, 각 년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8~2019), MDIS.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지역의 자금역외유출 현황 및 시사점”, 조사연구보고서, 2007.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조사연구보고서, 2013.

한국은행 울산본부, “울산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연구보고서, 2013.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각 년도.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역외유출현황 및 시사점”, 2010.

허문구 외, “지역소득 역외유출경로 추적과 생산분배소득 격차요인 분석(경남지역의 생산분배소득을 중심으로), 경남경제리뷰, 한국은행 경남본부, 2015.

- 宮本憲一・横田茂・中村剛治郎, 심재희(역), “지역경제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 Campbell R. McConnell, and Stanley L. Brue(1995), Contemporary Labor Economics, Fourth Edition.
- Lowe, P., Ray, C., Ward, N., Wood, R. and Woodward, R. 1998. *Participati on in rural development: a review of European experience*, Research Report, Centre for Rural Economy, University of Newcastle-upon-Tyne.
- Mike Campbell(1996), Local Labour market Management: Definition, concepts and Instrument 28(Oct)
- OECD(1998a), Decentralizing Employment Policies:New Trend and Challenges, The Venice Conference
- OECD(1998b), Local Management For More Effective Employment Poli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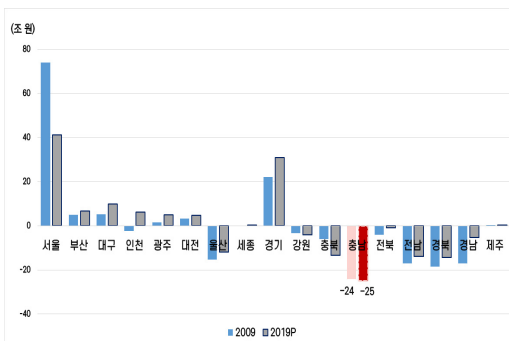
[부록 1] 설문 조사서

지역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의견 조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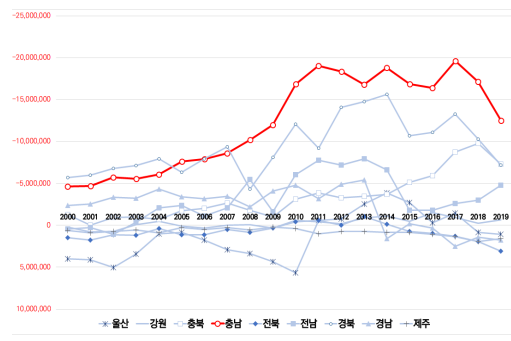
1.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는 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됩니다.
2. 충청남도는 민선5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정착’의 일환으로 소득 역외유출 수준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습니다.
3. 그러나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수준은 여전히 전국 광역 시도 중 1위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본 조사를 통해 법제도 측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4. 귀하의 응답은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본 설문조사는 관련분야 연구 경험자 및 충남의 지역경제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본 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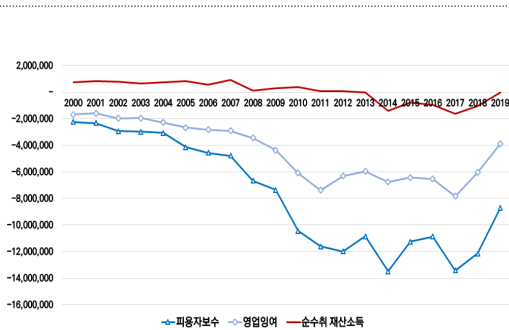
주관기관	충남연구원	연구책임 : 신 동 호 선임연구위원, cyberdhs@cni.re.kr
연락처	041-840-1238	담당자 : 강 수 현 연구원 sh3737@cn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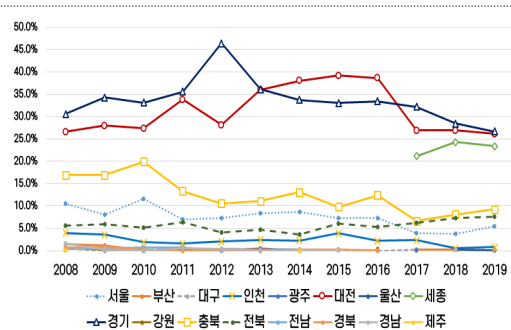
[전국 광역시도별 소득 역외 유출입 비중]



[충남 및 주요 소득유출지역 유출액 추이 비교]



[충남 지역계정 별 역외유출 추정]



[충남 근로소득 지역별 유출비중
(지역별고용조사자료 기준)]

※ 각 문항 중 귀하의 평소 견해와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1) 지역차원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문항 2) 다음 중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소득 역외유출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분공장형태의 기업입지로 인한 영업잉여의 타지역 유출
② 직주분리(職住分離)로 인한 피용자 보수(근로소득)의 타지역 유출
③ 지역 내 투자여건 미흡으로 인한 지역자금의 타지역 유출
④ 열악한 소비시장으로 인한 타지역으로의 소비유출
⑤ 지역 산업생태계 취약으로 인한 중간재의 역외조달에 따른 타지역 유출
⑥ 기타(_____)

(문항 3) 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생산 ② 소비 ③ 투자 ④ 고용 ⑤ 정주환경
⑥ 기타(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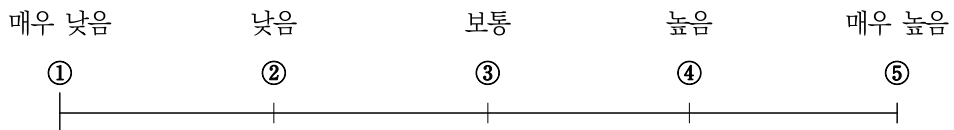
(문항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는 발의 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안에서 지원 대상지역으로 소득 역외유출지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문항 5)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가장 중요한 개선방향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만 차례로 선택)

개 선 방 향	1순위부터 차례로 한 가지만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1) 영업잉여 유출방지를 위한 유치기업의 현지법인화 유도	()	()	()
2)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 재투자 확대			
3)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확대			
4) 지역민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5) 지역자금 역내순환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 육성			
6) 직주분리(職住分離)현상 완화를 위한 양호한 정주여건 조성			
7) 지역 인재육성 및 역내 채용 확대			
8) 역내 중간재 조달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			
9)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역경제순환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문항 6) 지역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다음의 법·제도 및 시책은 얼마나 중요/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매우 시급 5점, 전혀 중요치 않음/전혀 시급하지 않음 1점)



개 선 과 제	중요도	시급성
1) 소득역외유출 지역의 유치기업 현지법인화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지원 확대	()점	()점
2) 지역 재투자법 제정	()점	()점
3) 생산과 소비의 연계 및 지역화폐(지역상품권) 확대	()점	()점
4) 지역주민 고용지원금 확대	()점	()점
5) 역내 투자 등 자금순환 확대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 설립	()점	()점
6) 이전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지원 확대	()점	()점
7)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또는 할당제 도입	()점	()점
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상 지원대상에 소득역외유출 지자체 포함	()점	()점
9)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책임제 도입	()점	()점

(기타의견) 전술한 법·제도 및 시책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일반사항)

성 명	()
소 속	()
연락처	Phone No. () *기재해주신 핸드폰번호로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신동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백운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강수현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21-11 ·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과제

글쓴이 · 신동호, 백운성, 강수현

발행자 · 유동훈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1년 12월 31일 / 발행 · 2021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567-8

<http://www.cni.re.kr>

© 2021.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cni.re.kr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ISBN: 978-89-6124-567-8